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유산법」)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자연유산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구·군 문화유산 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장

1. 대상유산 :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4개소 (허용기준 29건)

연번	고시	종목	유산명	구·군	상세주소
1	1	기념물	삼목도 선사 유적	중구	중구 운서동 1830-1번지 등 / 40필지
2	2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3	3	유형문화유산	인천도호부 관아	미추홀구	미추홀구 문학동 343-2
4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미추홀구 문학동 349-2 외
5	4	기념물	문학산성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6	5	기념물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미추홀구 용현동 442
7	6	유형문화유산	논현포대	남동구	남동구 논현동 648-1
8	7	기념물	김재로 묘		남동구 운연동 산64-13
9	8	기념물	월성박씨 종중 묘역		남동구 서창동 산29-17
10	9	문화유산자료	장도포대 터		남동구 논현동 111-13 외
11	10	기념물	이찰·이울 형제 정려	계양구	계양구 갈현동 산73-6
12	11	기념물	이선봉 묘역		계양구 동양동 152-5
13	12	유형문화유산	심즛 신도비	서구	서구 공촌동 산8
14	13	기념물	류사눌 묘		서구 경서동 산200-1
15	14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서구 대곡로 356
16		기념물	평산신씨 종중 묘역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17	15	기념물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서구 대곡동 213-9
18	16	기념물	김안정 묘 및 묘비		서구 원당동 810-10

19	17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	강화군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외
20		자연유산	강화 보문사 향나무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21		민속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맷돌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22	18	유형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23	19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
24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 외
25	20	기념물	이규보 묘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115
26	21	기념물	강화 봉천대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63
27	22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28	23	기념물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1 외
29	24	기념물	허유전 묘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
30	25	기념물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
31	26	기념물	강화 건평돈대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32	27	문화유산자료	강화 원흥사 터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
33	28	문화유산자료	강화 망월돈대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
34	29	문화유산자료	강화 무태돈대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4 외	

2. 조정사유

- 「문화유산법」 제13조,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 시지정 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수립하여 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 본 공고 내용은 조정(안)이며,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고시할 예정임

3. 조정내용 :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5. 8. 18. ~ 2025. 9. 7.(21일간)

5.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건축 및 개발행위) :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 영향진단을 생략하고 각 군·구 국가유산 관련부서(국가유산과, 문화관광과 등) 협의를 거쳐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축 및 개발행위) : 약식영향진단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5년 9월 7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2]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bjs5467@korea.kr) 제출
 - ※ 공고기간 만료일 도착분에 한함 (2025년 9월 7일 18:00까지)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방문 : 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군·구 문화유산 관련부서

연번	시·구·군	부서명	주 소	연락처
1	인천시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9층	032-440-4032
2	중구	문화관광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제1청사 동별관 1층	032-760-6474
3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본관1청사 3층	032-880-7973
4	남동구	문화관광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본관 6층	032-453-2133
5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4층	032-450-5824
6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3층	032-560-5932
7	강화군	국가유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지킴이센터 3층	032-930-3907

- 우편 :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시청 신관 9층,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032-440-4032)

7.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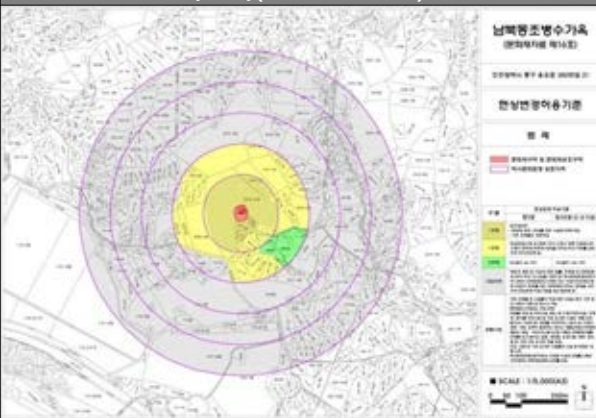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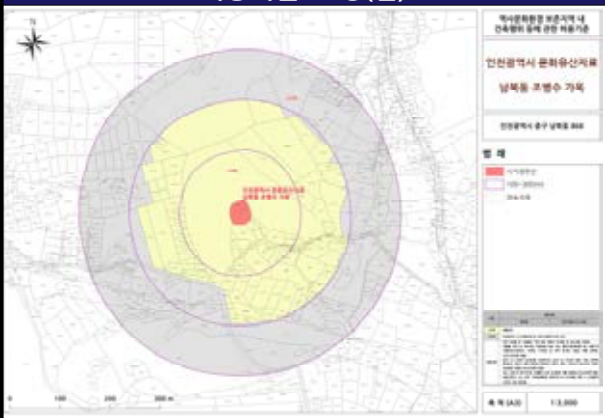
- 본 허용기준 조정(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1부.
 2.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의견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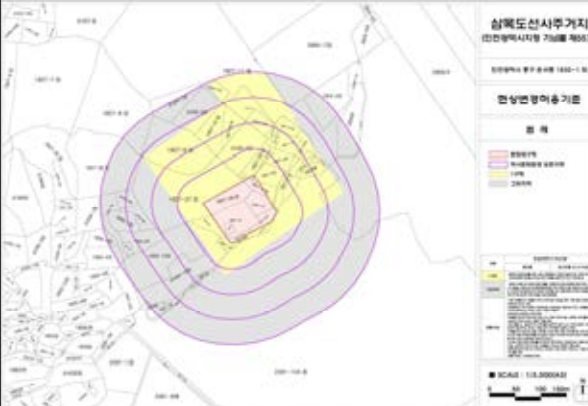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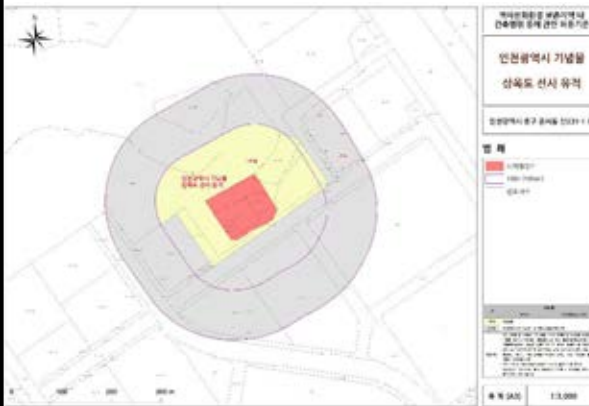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 중구

■ 남북동 조병수 가옥

구분		기고시(2015.09.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남북동조병수가옥 (문화재지명 제14호) 문화재보호구역 한남면동허용기준 별 제 SCALE 1:5,0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지류 남북동 조병수 가옥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300 SCALE 1:5,000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0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 삼목도 선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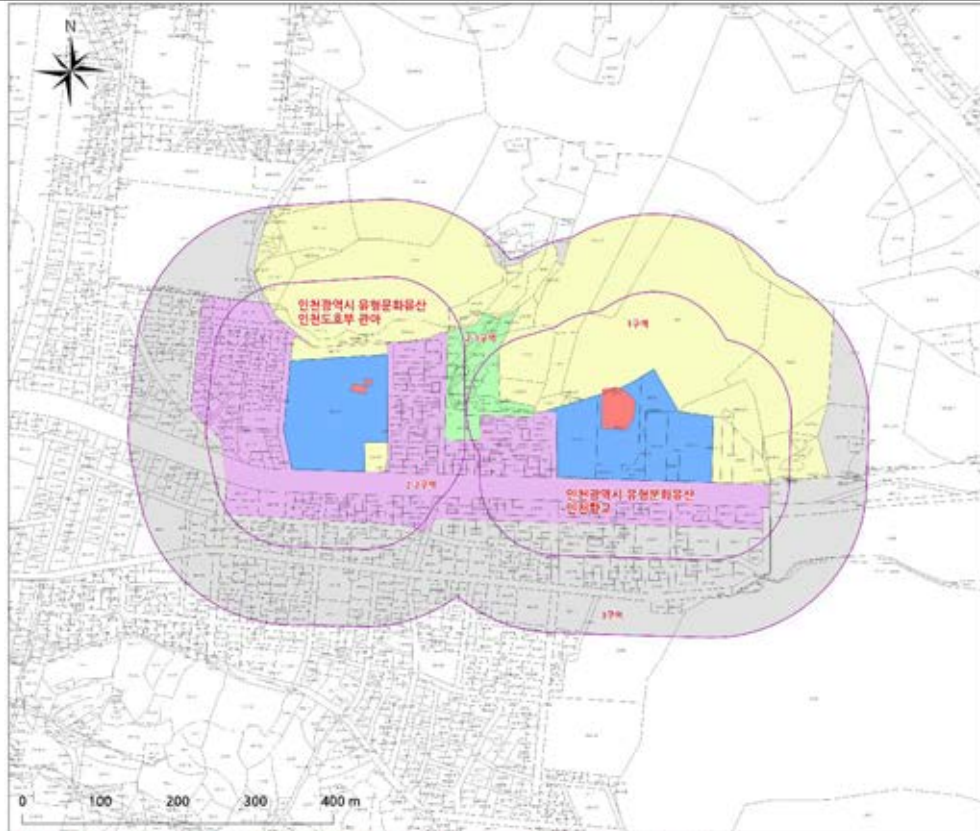
구분		기고시(2014.01.2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삼목도선사주거지 (인천광역시청 기준(제55호)) 현상면적허용기준	인천광역시 기념물 삼목도 선사 유적 인천광역시청 기준(제55호)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신축·증축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가능 건축행위시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건축물 최고 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 개의 도로가 접해있을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지표조사 대상은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선행 공통사항은 1구역에만 해당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2. 미추홀구

■ 인천도호부 관아 외 1개소

구분	기고시(2010.04.14.)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위험물저장 1호, 11호 제1종 인천도호부관리 물11호 안전물감 문화재보존지구 현상변경 허가제한지구</p>		<p>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물의 용역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물문화유산 연성포구부 관아 인천광역시 유물문화유산 연성포구</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2-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4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4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2 외

범 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200(m)
- 연속지적

구분	용도	용적률(%)	높이(층수)
1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2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3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4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속 칙 (A3) **1: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2 외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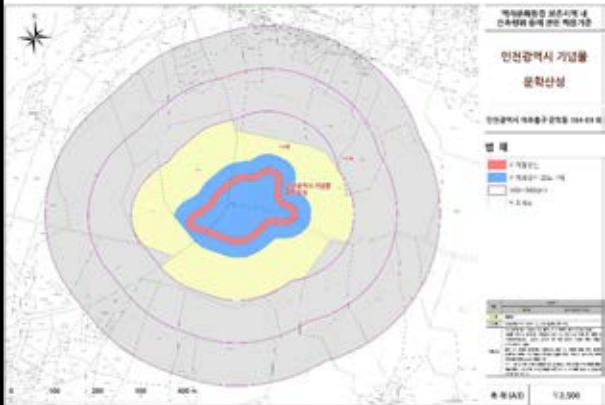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200(m)
- 연속지적

구분	용도	용적률(%)	높이(층수)
1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2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3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4구역	주거용도	100	15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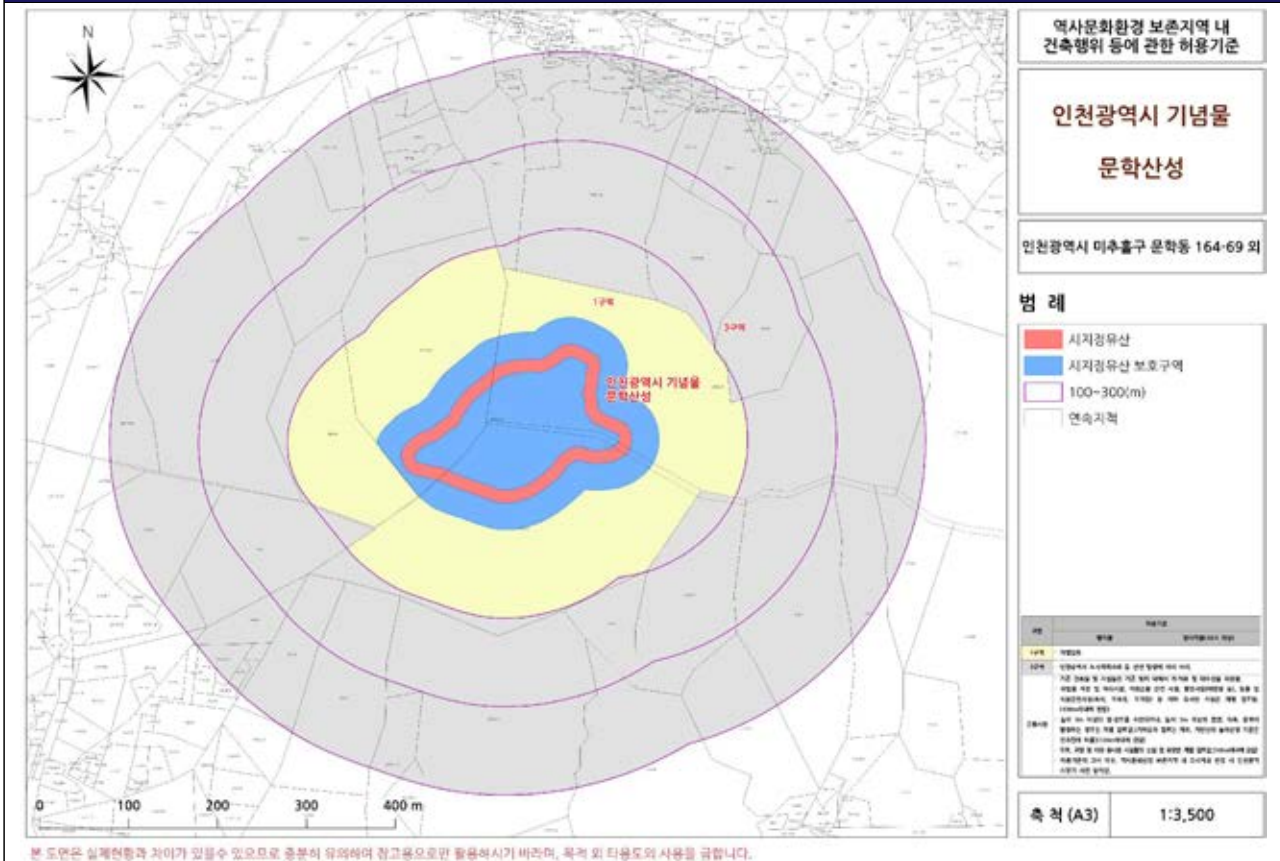
속 칙 (A3) **1: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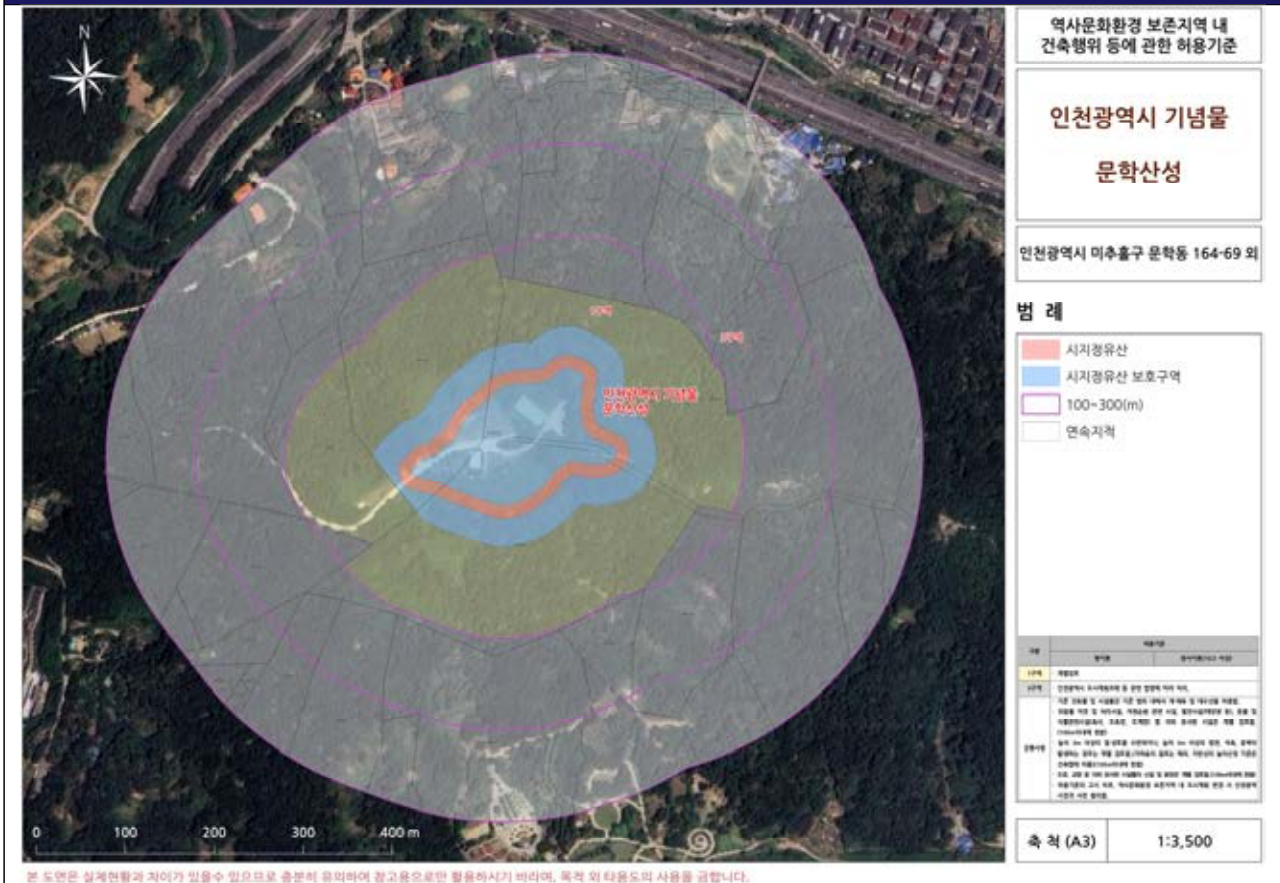
■ 문학산성

구분		신규고시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신규 작성 대상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고시문		평지붕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경사지붕(3:10 이상)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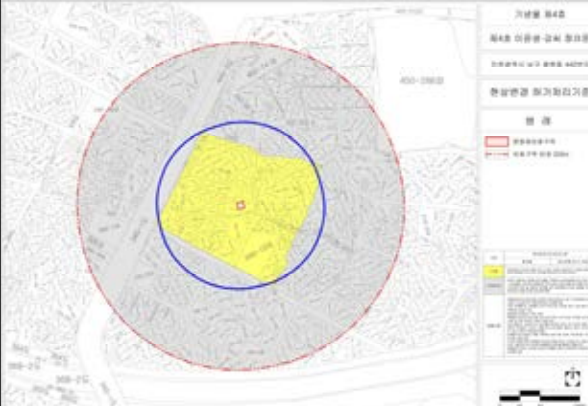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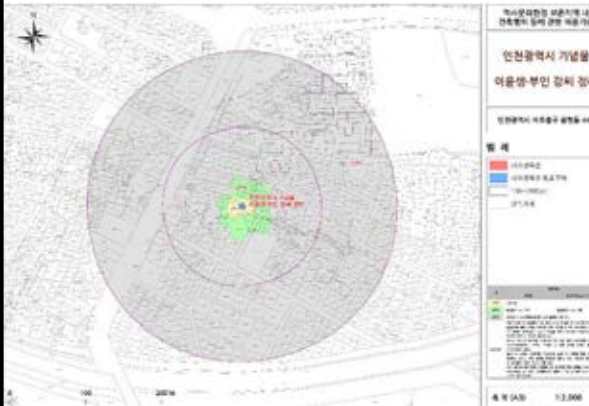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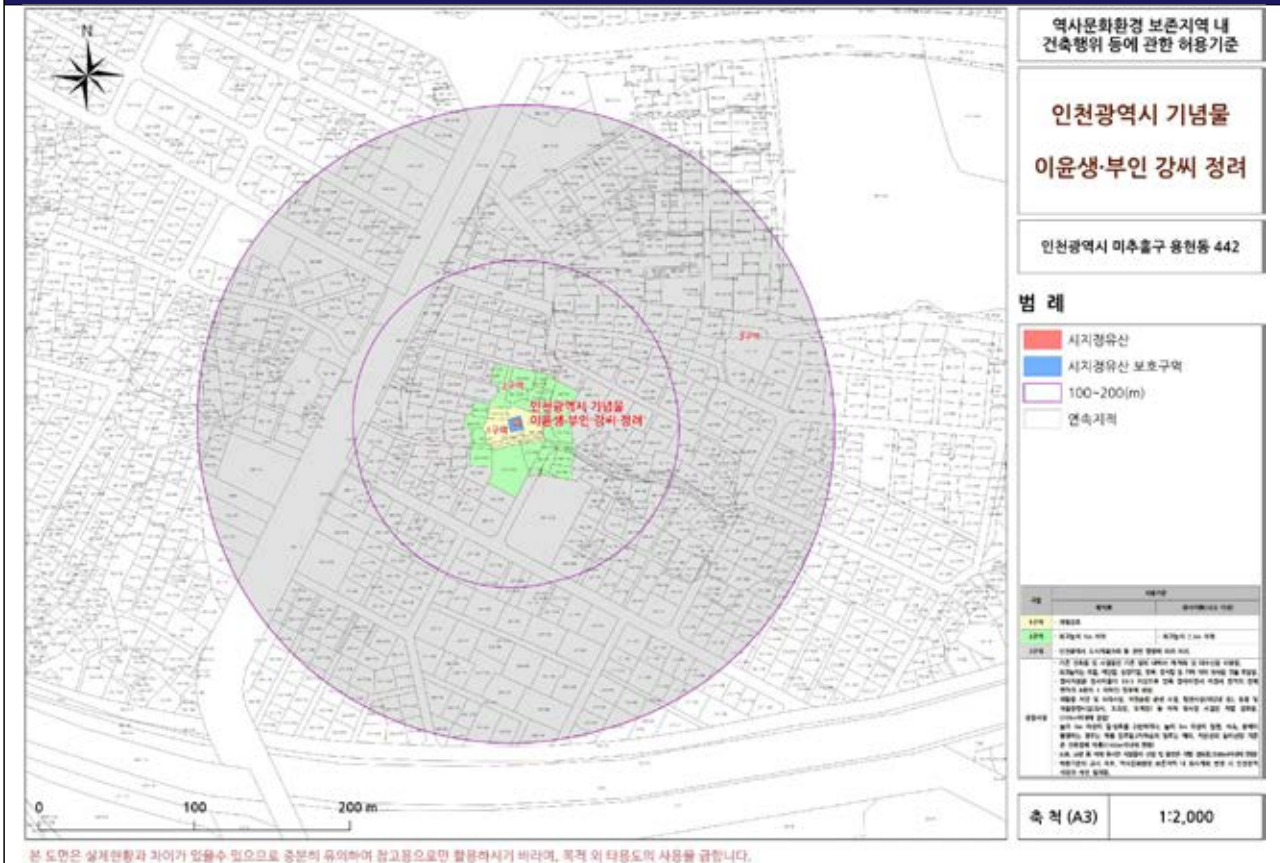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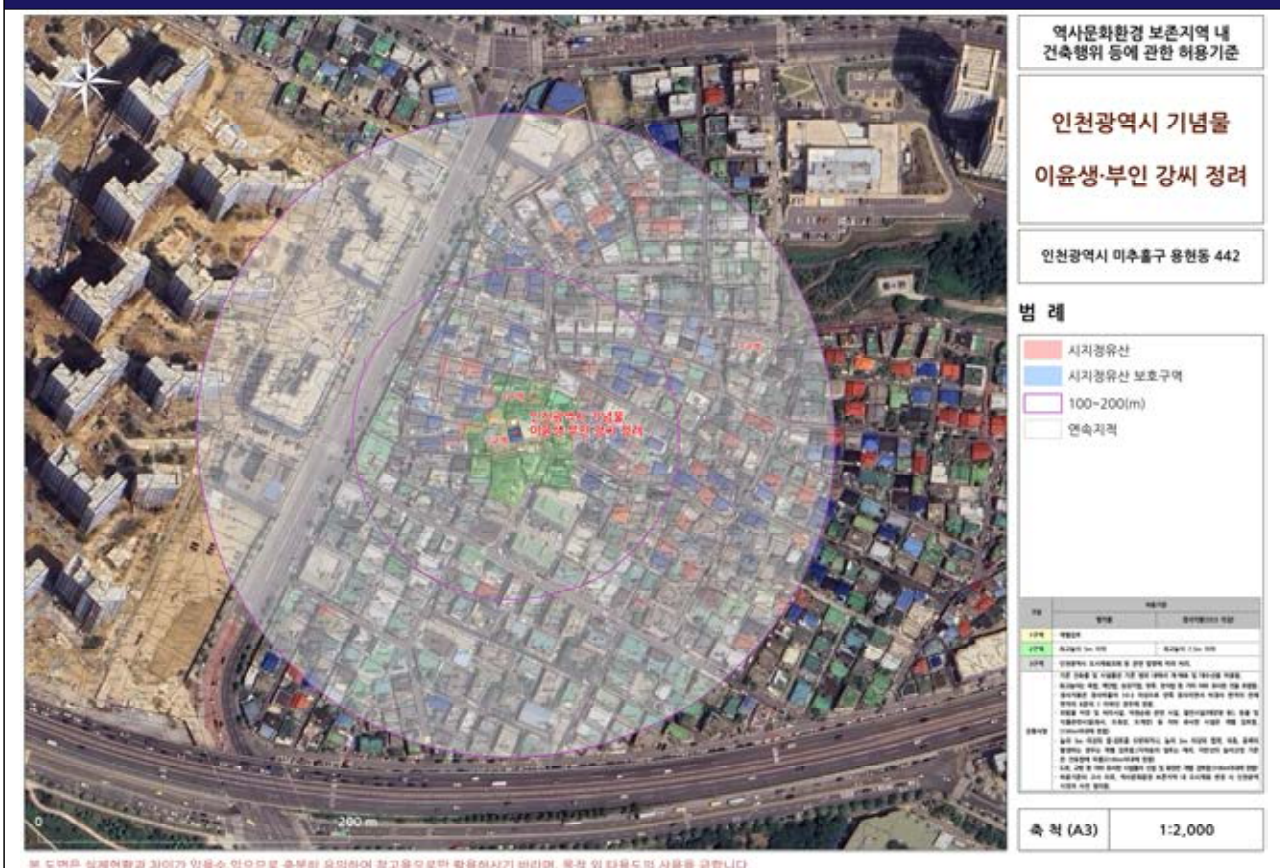
구분	기고시(2010.04.14.)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기상청 제4호 특수용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보존구역(100m) 보호구역(400m) 현상변경 허가허용기준 범주 - 문화재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천광역시 기념물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인천광역시 역사문화 보존지역 제4호 범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 보전지역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물으론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도면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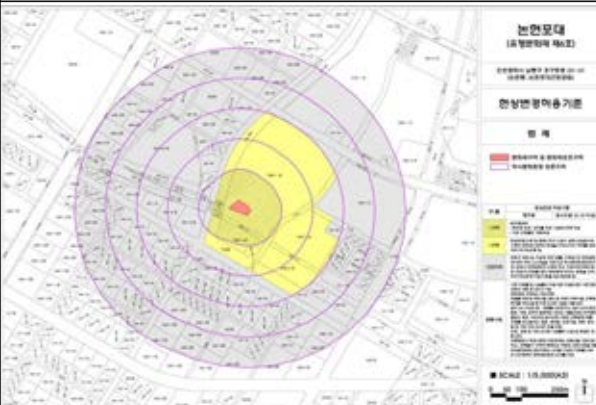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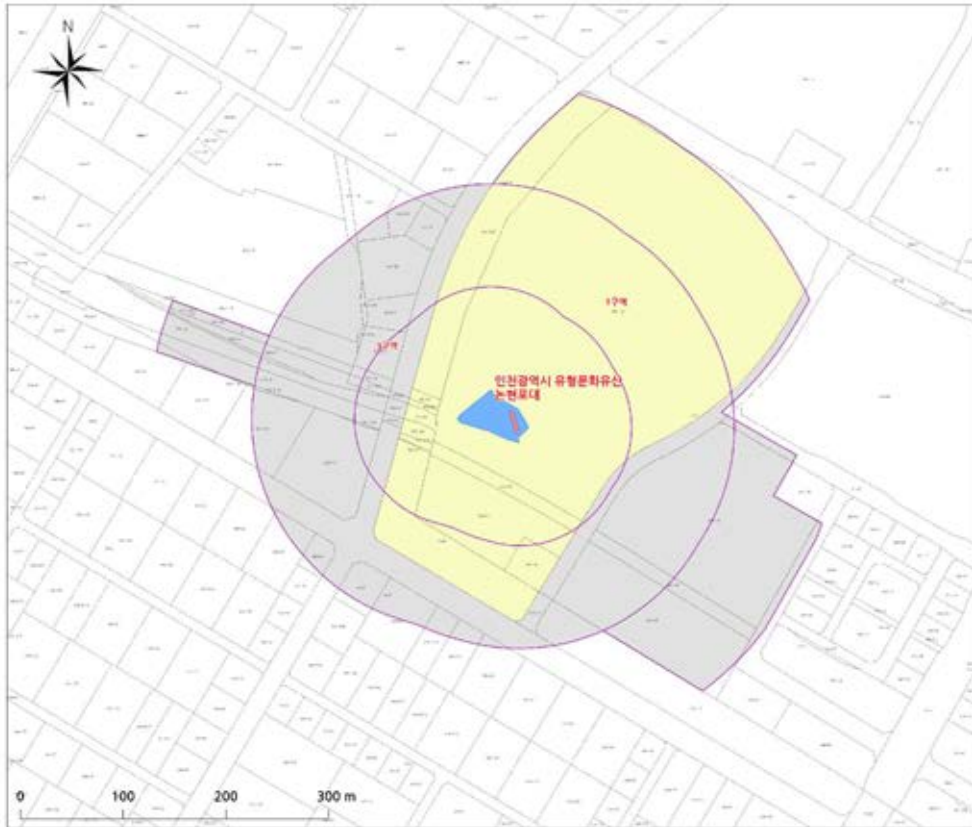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물으론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도면의 사용을 금합니다.

3. 남동구

■ 논현포대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허용기준</th> </tr> <tr> <th></th> <th>평지붕</th> <th>경사지붕(3:1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구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td> </tr> <tr> <td>1구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td> </tr> <tr> <td>그 외 지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td> </tr> <tr> <td>공통 사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td> </tr> </tbody> </tabl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허용기준</th> </tr> <tr> <th></th> <th>평지붕</th> <th>경사지붕(10:3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구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td> </tr> <tr> <td>3구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td> </tr> <tr> <td>공통 사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td> </tr> </tbody> </tabl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논현포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15-56 외

범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해설
시지정유산	시지정유산	문화재청에서 지정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시지정유산의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100~300(m)	100~300(m)	시지정유산의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연속지적	연속지적	연속지적은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축척 (A3) 1:3,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논현포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15-56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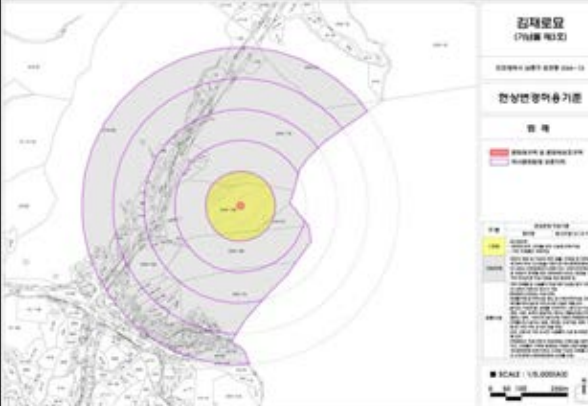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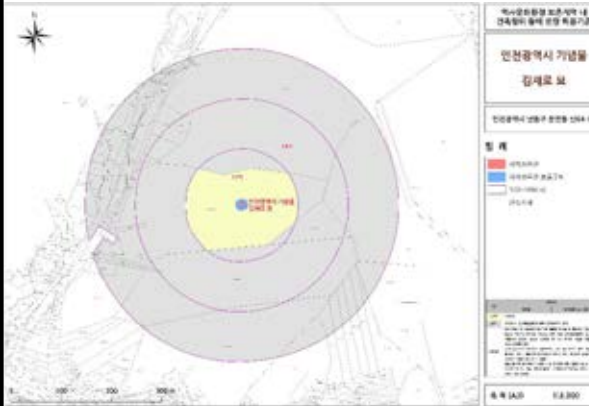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해설
시지정유산	시지정유산	문화재청에서 지정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시지정유산의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100~300(m)	100~300(m)	시지정유산의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연속지적	연속지적	연속지적은 「국립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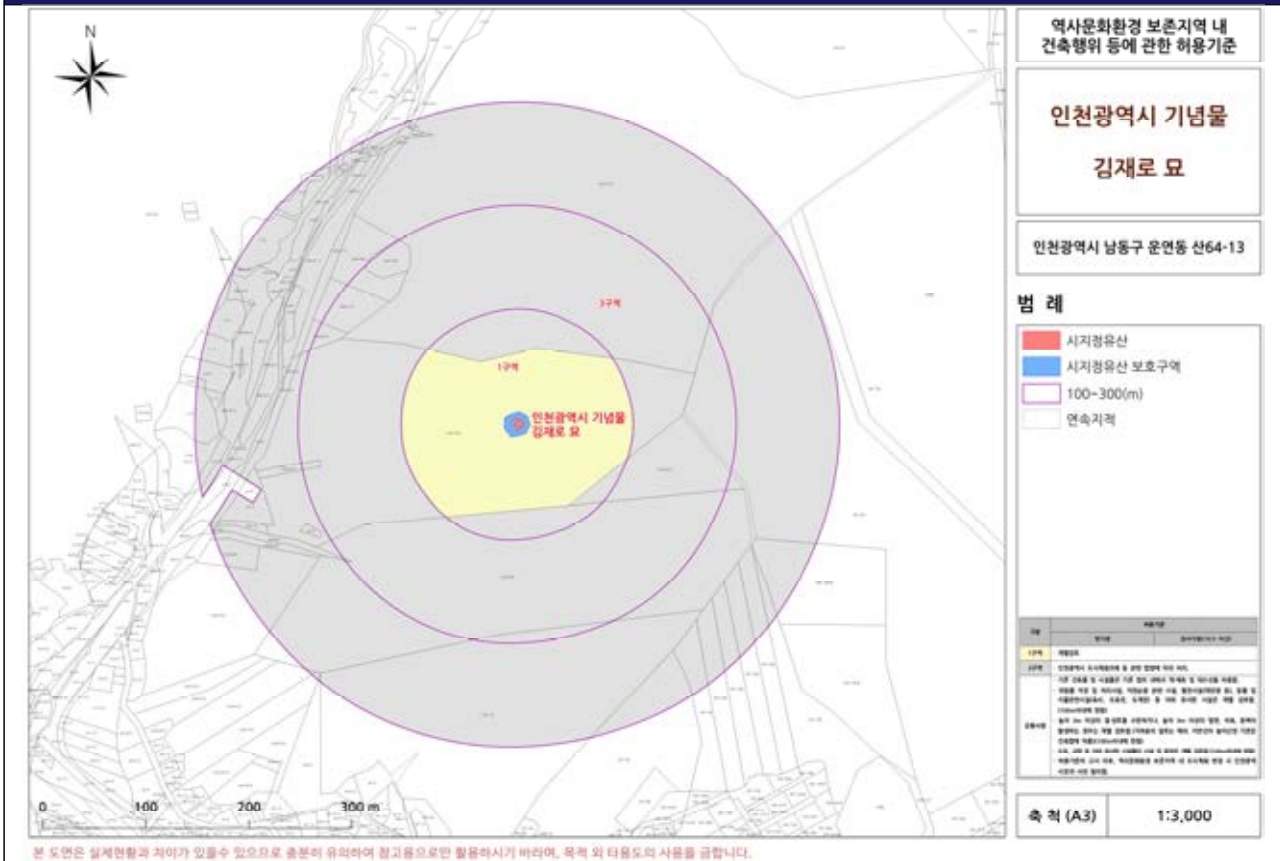
축척 (A3) 1:3,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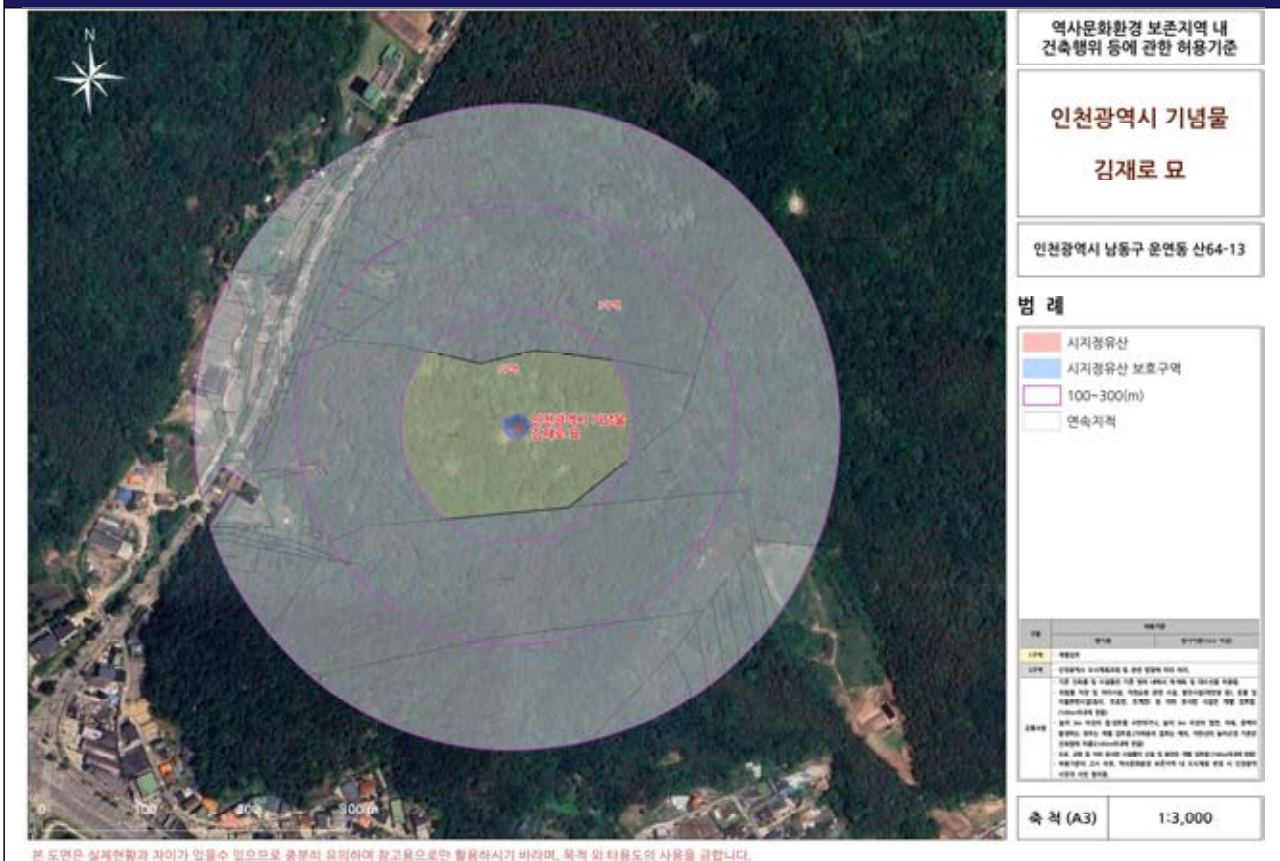
■ 김재로 묘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김재로묘 (71888 제3호)</p> <p>현상변경허용기준</p> <p>범 계</p> <p>SCALE 1:8,000</p>		<p>인천광역시 기념물</p> <p>김재로 묘</p> <p>SCALE 1:8,000</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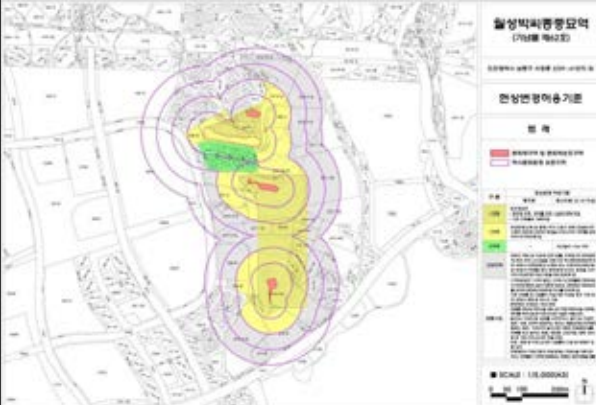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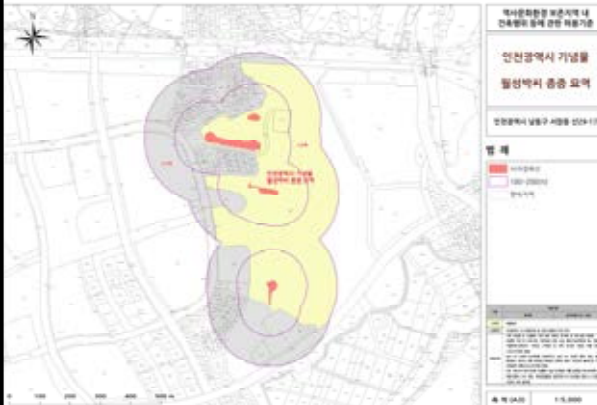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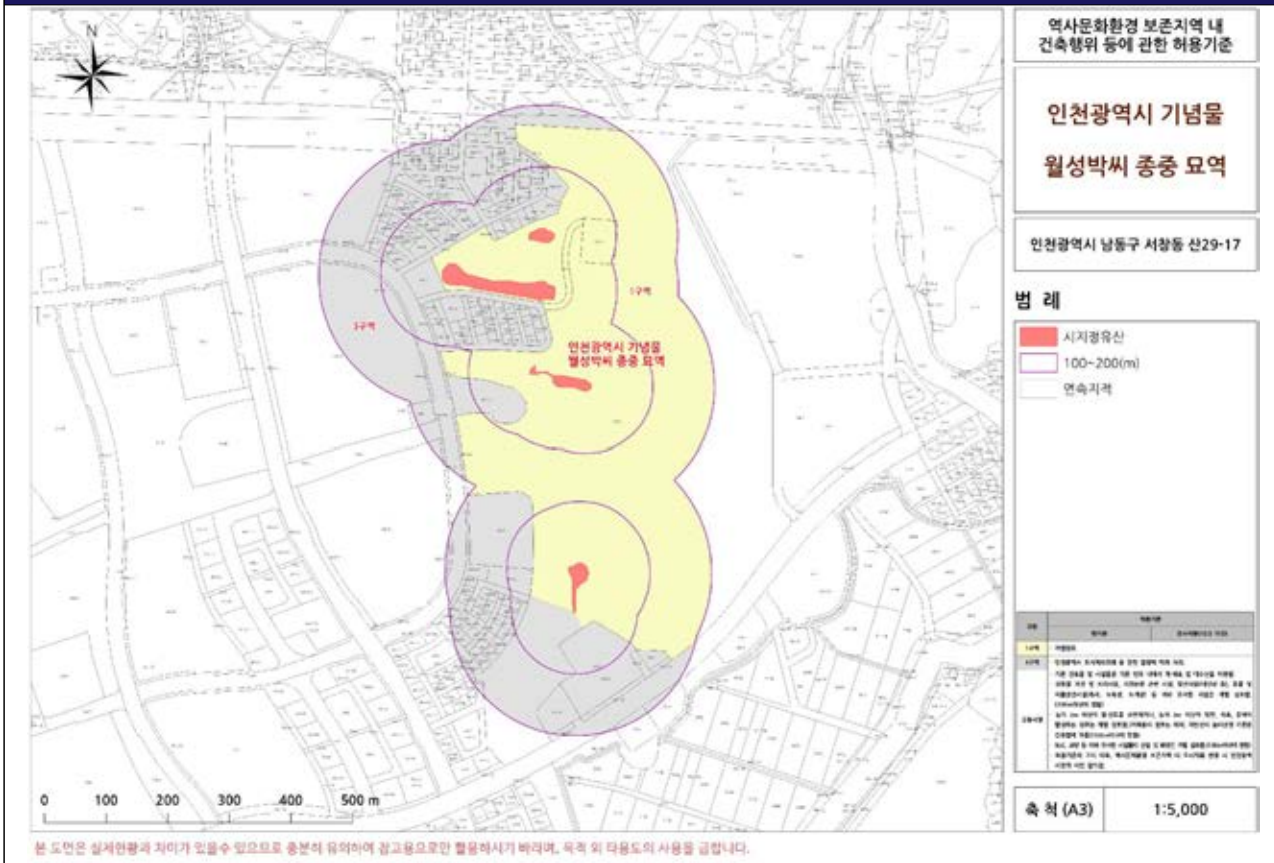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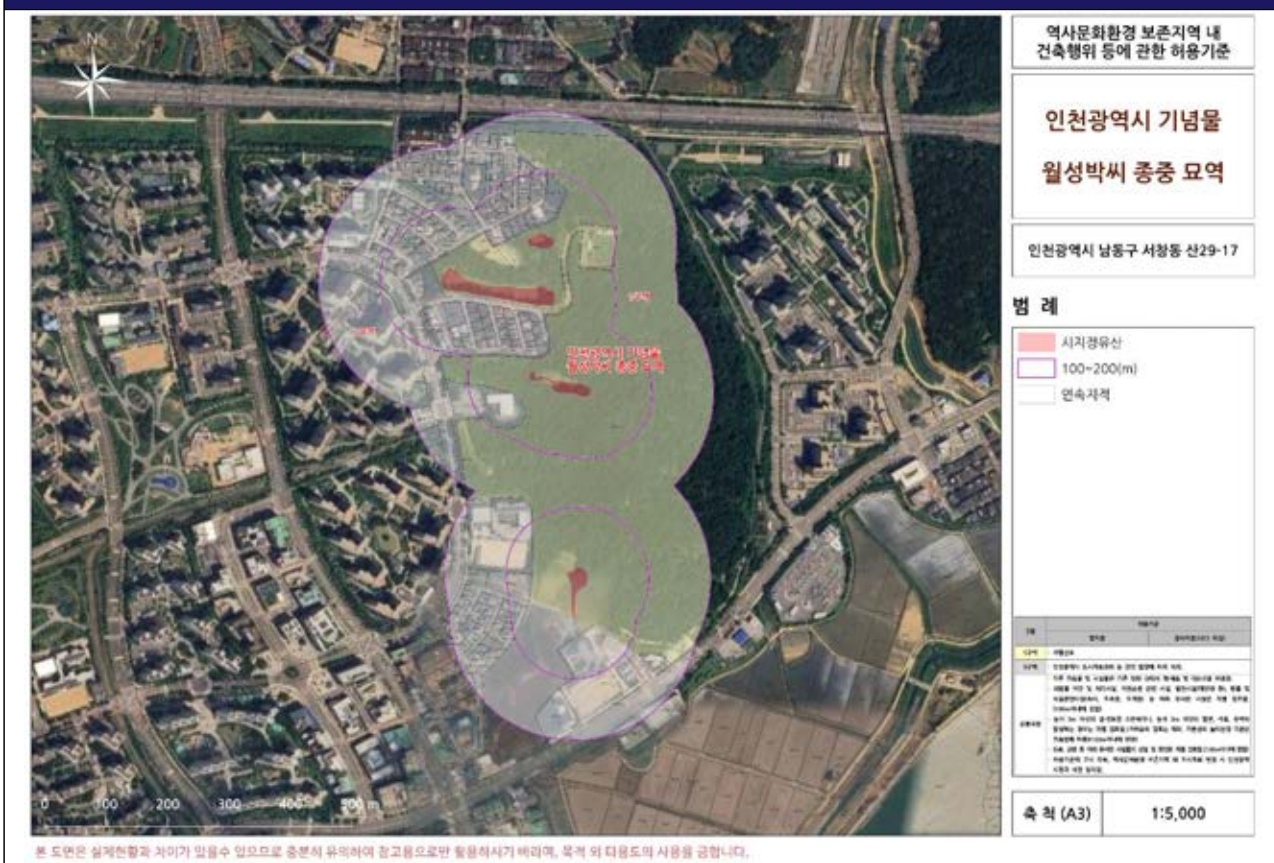
■ 월성박씨 종중 묘역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 ◦ 최고높이 10m 이하	
	2구역	-	◦ 최고높이 10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빛금친 1구역 제외), 2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르되, 문화재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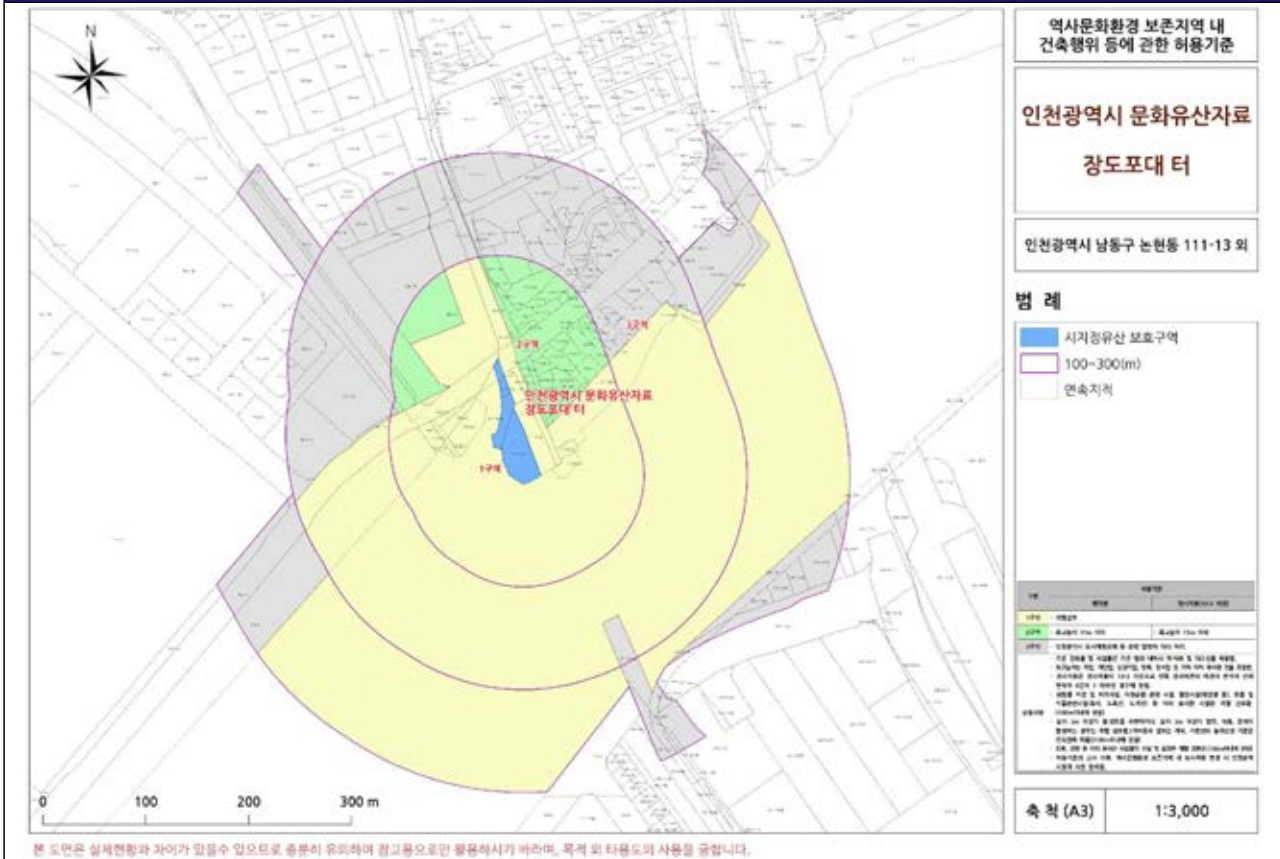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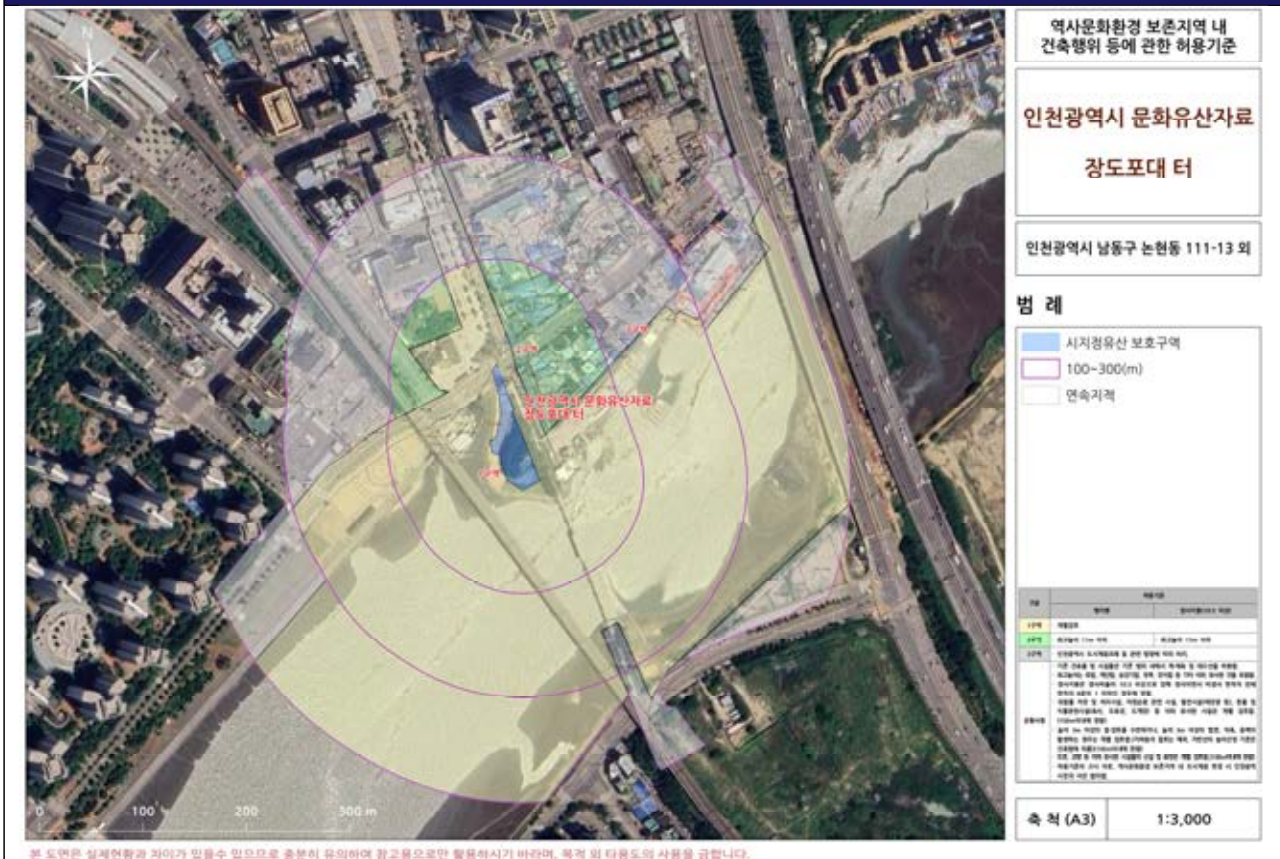
■ 장도포대 터

구분		기고시(2015.09.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3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7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9m 이하 	3구역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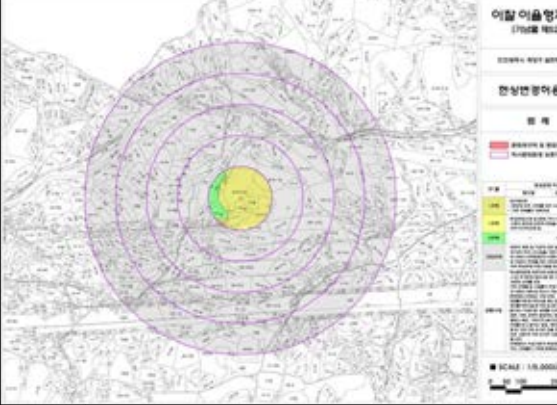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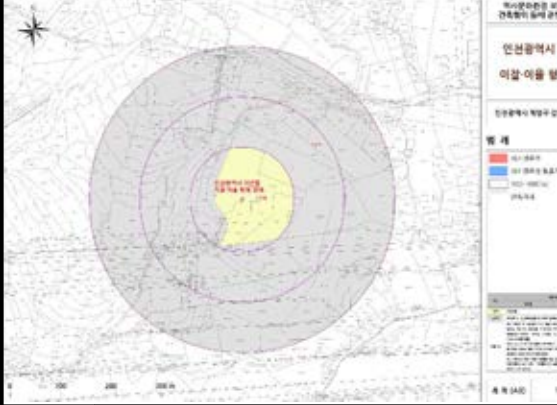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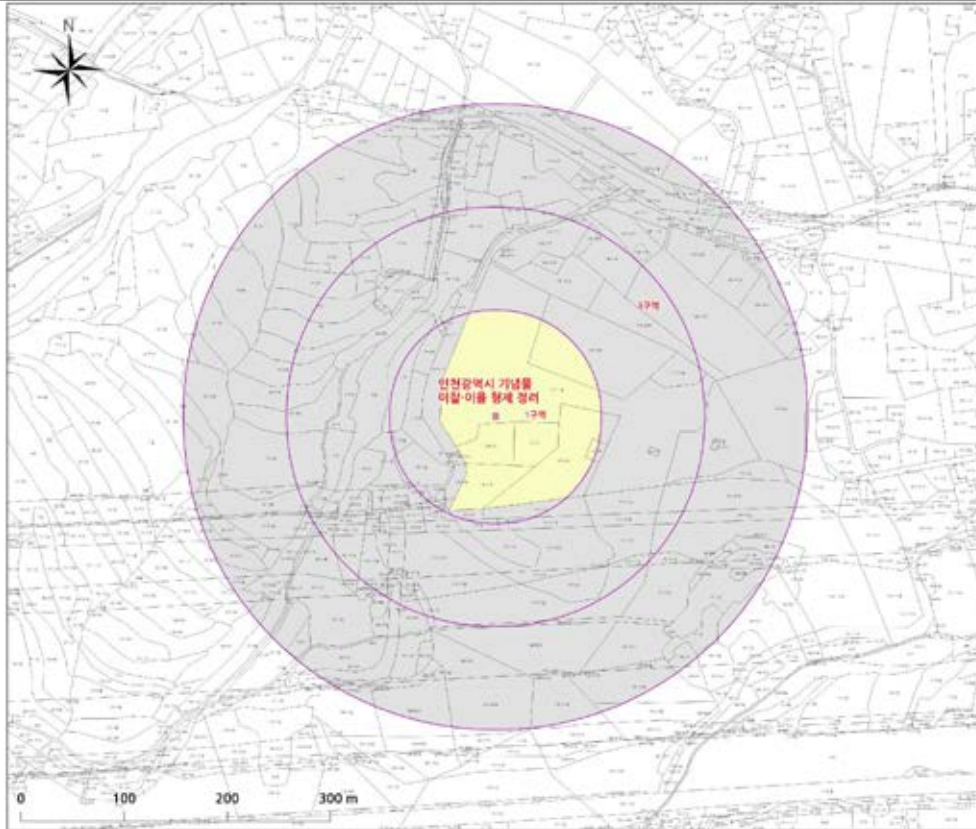


4. 계양구

■ 이철·이울 형제 정려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이철·이울형제정려 (1900 제22호)</p> <p>2017년 1월 16일 제정</p> <p>한성백제문화유산</p> <p>범 계</p> <p>1. 이철·이울형제정려</p> <p>2. 이철·이울형제정려</p> <p>3. 이철·이울형제정려</p> <p>4. 이철·이울형제정려</p> <p>5. 이철·이울형제정려</p> <p>6. 이철·이울형제정려</p> <p>7. 이철·이울형제정려</p> <p>8. 이철·이울형제정려</p> <p>9. 이철·이울형제정려</p> <p>10. 이철·이울형제정려</p> <p>11. 이철·이울형제정려</p> <p>12. 이철·이울형제정려</p> <p>13. 이철·이울형제정려</p> <p>14. 이철·이울형제정려</p> <p>15. 이철·이울형제정려</p> <p>16. 이철·이울형제정려</p> <p>17. 이철·이울형제정려</p> <p>18. 이철·이울형제정려</p> <p>19. 이철·이울형제정려</p> <p>20. 이철·이울형제정려</p> <p>21. 이철·이울형제정려</p> <p>22. 이철·이울형제정려</p> <p>23. 이철·이울형제정려</p> <p>24. 이철·이울형제정려</p> <p>25. 이철·이울형제정려</p> <p>26. 이철·이울형제정려</p> <p>27. 이철·이울형제정려</p> <p>28. 이철·이울형제정려</p> <p>29. 이철·이울형제정려</p> <p>30. 이철·이울형제정려</p> <p>31. 이철·이울형제정려</p> <p>32. 이철·이울형제정려</p> <p>33. 이철·이울형제정려</p> <p>34. 이철·이울형제정려</p> <p>35. 이철·이울형제정려</p> <p>36. 이철·이울형제정려</p> <p>37. 이철·이울형제정려</p> <p>38. 이철·이울형제정려</p> <p>39. 이철·이울형제정려</p> <p>40. 이철·이울형제정려</p> <p>41. 이철·이울형제정려</p> <p>42. 이철·이울형제정려</p> <p>43. 이철·이울형제정려</p> <p>44. 이철·이울형제정려</p> <p>45. 이철·이울형제정려</p> <p>46. 이철·이울형제정려</p> <p>47. 이철·이울형제정려</p> <p>48. 이철·이울형제정려</p> <p>49. 이철·이울형제정려</p> <p>50. 이철·이울형제정려</p> <p>51. 이철·이울형제정려</p> <p>52. 이철·이울형제정려</p> <p>53. 이철·이울형제정려</p> <p>54. 이철·이울형제정려</p> <p>55. 이철·이울형제정려</p> <p>56. 이철·이울형제정려</p> <p>57. 이철·이울형제정려</p> <p>58. 이철·이울형제정려</p> <p>59. 이철·이울형제정려</p> <p>60. 이철·이울형제정려</p> <p>61. 이철·이울형제정려</p> <p>62. 이철·이울형제정려</p> <p>63. 이철·이울형제정려</p> <p>64. 이철·이울형제정려</p> <p>65. 이철·이울형제정려</p> <p>66. 이철·이울형제정려</p> <p>67. 이철·이울형제정려</p> <p>68. 이철·이울형제정려</p> <p>69. 이철·이울형제정려</p> <p>70. 이철·이울형제정려</p> <p>71. 이철·이울형제정려</p> <p>72. 이철·이울형제정려</p> <p>73. 이철·이울형제정려</p> <p>74. 이철·이울형제정려</p> <p>75. 이철·이울형제정려</p> <p>76. 이철·이울형제정려</p> <p>77. 이철·이울형제정려</p> <p>78. 이철·이울형제정려</p> <p>79. 이철·이울형제정려</p> <p>80. 이철·이울형제정려</p> <p>81. 이철·이울형제정려</p> <p>82. 이철·이울형제정려</p> <p>83. 이철·이울형제정려</p> <p>84. 이철·이울형제정려</p> <p>85. 이철·이울형제정려</p> <p>86. 이철·이울형제정려</p> <p>87. 이철·이울형제정려</p> <p>88. 이철·이울형제정려</p> <p>89. 이철·이울형제정려</p> <p>90. 이철·이울형제정려</p> <p>91. 이철·이울형제정려</p> <p>92. 이철·이울형제정려</p> <p>93. 이철·이울형제정려</p> <p>94. 이철·이울형제정려</p> <p>95. 이철·이울형제정려</p> <p>96. 이철·이울형제정려</p> <p>97. 이철·이울형제정려</p> <p>98. 이철·이울형제정려</p> <p>99. 이철·이울형제정려</p> <p>100. 이철·이울형제정려</p>		<p>인천광역시 기념물</p> <p>이철·이울 형제 정려</p> <p>인천광역시 기념물 지정번호 제17호</p> <p>범 계</p> <p>1. 이철·이울형제정려</p> <p>2. 이철·이울형제정려</p> <p>3. 이철·이울형제정려</p> <p>4. 이철·이울형제정려</p> <p>5. 이철·이울형제정려</p> <p>6. 이철·이울형제정려</p> <p>7. 이철·이울형제정려</p> <p>8. 이철·이울형제정려</p> <p>9. 이철·이울형제정려</p> <p>10. 이철·이울형제정려</p> <p>11. 이철·이울형제정려</p> <p>12. 이철·이울형제정려</p> <p>13. 이철·이울형제정려</p> <p>14. 이철·이울형제정려</p> <p>15. 이철·이울형제정려</p> <p>16. 이철·이울형제정려</p> <p>17. 이철·이울형제정려</p> <p>18. 이철·이울형제정려</p> <p>19. 이철·이울형제정려</p> <p>20. 이철·이울형제정려</p> <p>21. 이철·이울형제정려</p> <p>22. 이철·이울형제정려</p> <p>23. 이철·이울형제정려</p> <p>24. 이철·이울형제정려</p> <p>25. 이철·이울형제정려</p> <p>26. 이철·이울형제정려</p> <p>27. 이철·이울형제정려</p> <p>28. 이철·이울형제정려</p> <p>29. 이철·이울형제정려</p> <p>30. 이철·이울형제정려</p> <p>31. 이철·이울형제정려</p> <p>32. 이철·이울형제정려</p> <p>33. 이철·이울형제정려</p> <p>34. 이철·이울형제정려</p> <p>35. 이철·이울형제정려</p> <p>36. 이철·이울형제정려</p> <p>37. 이철·이울형제정려</p> <p>38. 이철·이울형제정려</p> <p>39. 이철·이울형제정려</p> <p>40. 이철·이울형제정려</p> <p>41. 이철·이울형제정려</p> <p>42. 이철·이울형제정려</p> <p>43. 이철·이울형제정려</p> <p>44. 이철·이울형제정려</p> <p>45. 이철·이울형제정려</p> <p>46. 이철·이울형제정려</p> <p>47. 이철·이울형제정려</p> <p>48. 이철·이울형제정려</p> <p>49. 이철·이울형제정려</p> <p>50. 이철·이울형제정려</p> <p>51. 이철·이울형제정려</p> <p>52. 이철·이울형제정려</p> <p>53. 이철·이울형제정려</p> <p>54. 이철·이울형제정려</p> <p>55. 이철·이울형제정려</p> <p>56. 이철·이울형제정려</p> <p>57. 이철·이울형제정려</p> <p>58. 이철·이울형제정려</p> <p>59. 이철·이울형제정려</p> <p>60. 이철·이울형제정려</p> <p>61. 이철·이울형제정려</p> <p>62. 이철·이울형제정려</p> <p>63. 이철·이울형제정려</p> <p>64. 이철·이울형제정려</p> <p>65. 이철·이울형제정려</p> <p>66. 이철·이울형제정려</p> <p>67. 이철·이울형제정려</p> <p>68. 이철·이울형제정려</p> <p>69. 이철·이울형제정려</p> <p>70. 이철·이울형제정려</p> <p>71. 이철·이울형제정려</p> <p>72. 이철·이울형제정려</p> <p>73. 이철·이울형제정려</p> <p>74. 이철·이울형제정려</p> <p>75. 이철·이울형제정려</p> <p>76. 이철·이울형제정려</p> <p>77. 이철·이울형제정려</p> <p>78. 이철·이울형제정려</p> <p>79. 이철·이울형제정려</p> <p>80. 이철·이울형제정려</p> <p>81. 이철·이울형제정려</p> <p>82. 이철·이울형제정려</p> <p>83. 이철·이울형제정려</p> <p>84. 이철·이울형제정려</p> <p>85. 이철·이울형제정려</p> <p>86. 이철·이울형제정려</p> <p>87. 이철·이울형제정려</p> <p>88. 이철·이울형제정려</p> <p>89. 이철·이울형제정려</p> <p>90. 이철·이울형제정려</p> <p>91. 이철·이울형제정려</p> <p>92. 이철·이울형제정려</p> <p>93. 이철·이울형제정려</p> <p>94. 이철·이울형제정려</p> <p>95. 이철·이울형제정려</p> <p>96. 이철·이울형제정려</p> <p>97. 이철·이울형제정려</p> <p>98. 이철·이울형제정려</p> <p>99. 이철·이울형제정려</p> <p>100. 이철·이울형제정려</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최고높이 10m 이하 	
	2구역	-	◦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기념물
이찰·이울 형제 정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73-6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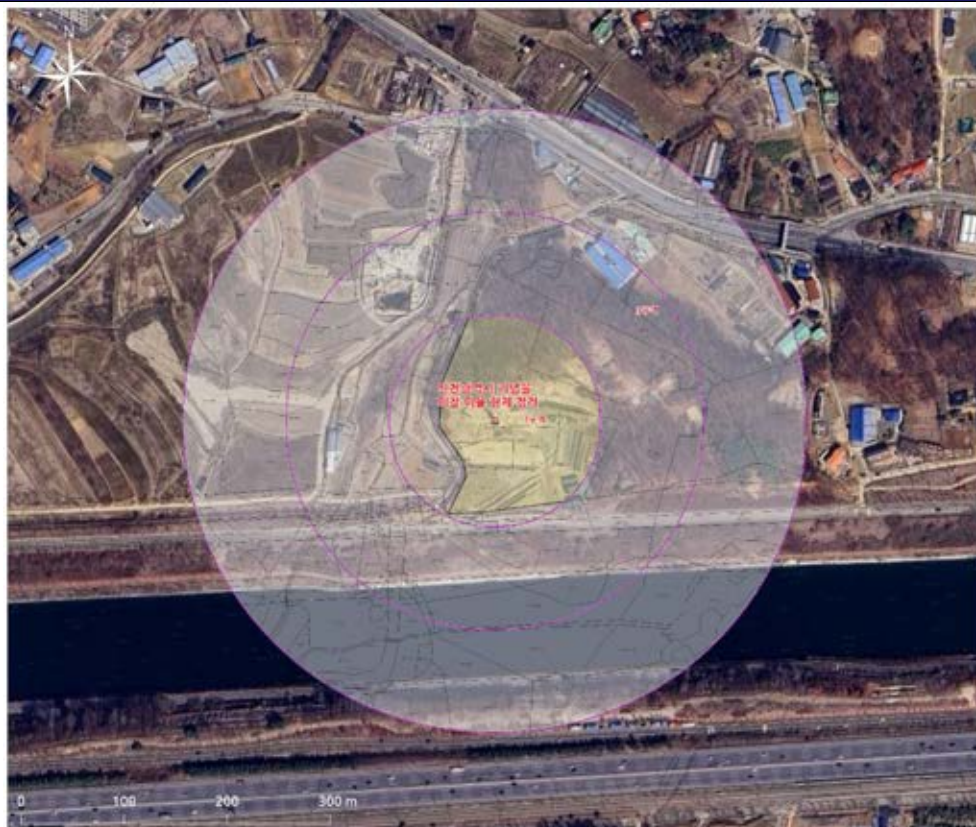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내용	공시(제정) 일자
1. 목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18. 12. 27.
2.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기념물 이찰·이울 형제 정려	2018. 12. 27.
3. 주요내용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축척 (A3) 1:3,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기념물
이찰·이울 형제 정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73-6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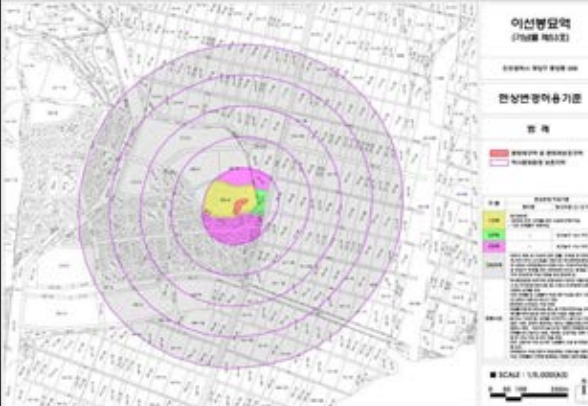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내용	공시(제정) 일자
1. 목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18. 12. 27.
2.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기념물 이찰·이울 형제 정려	2018. 12. 27.
3. 주요내용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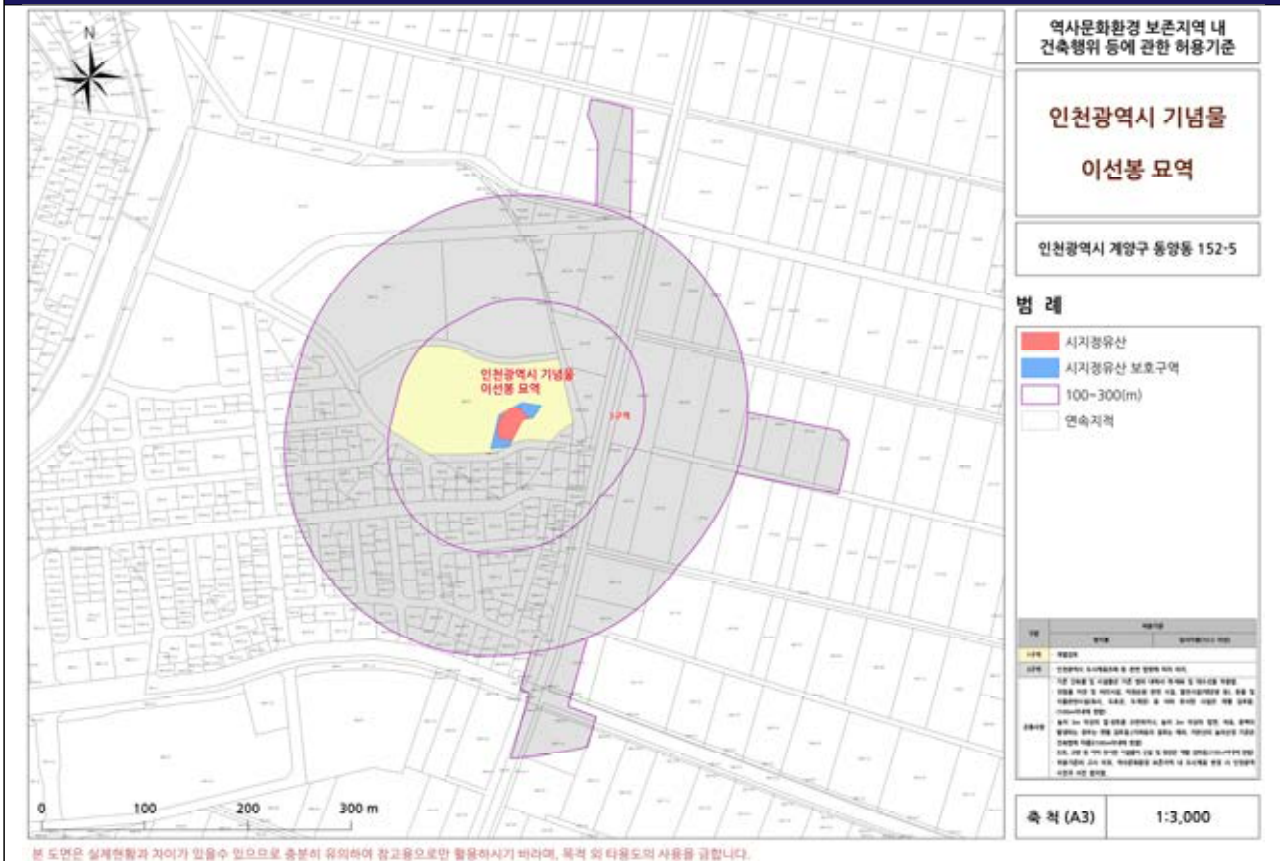
축척 (A3) 1:3,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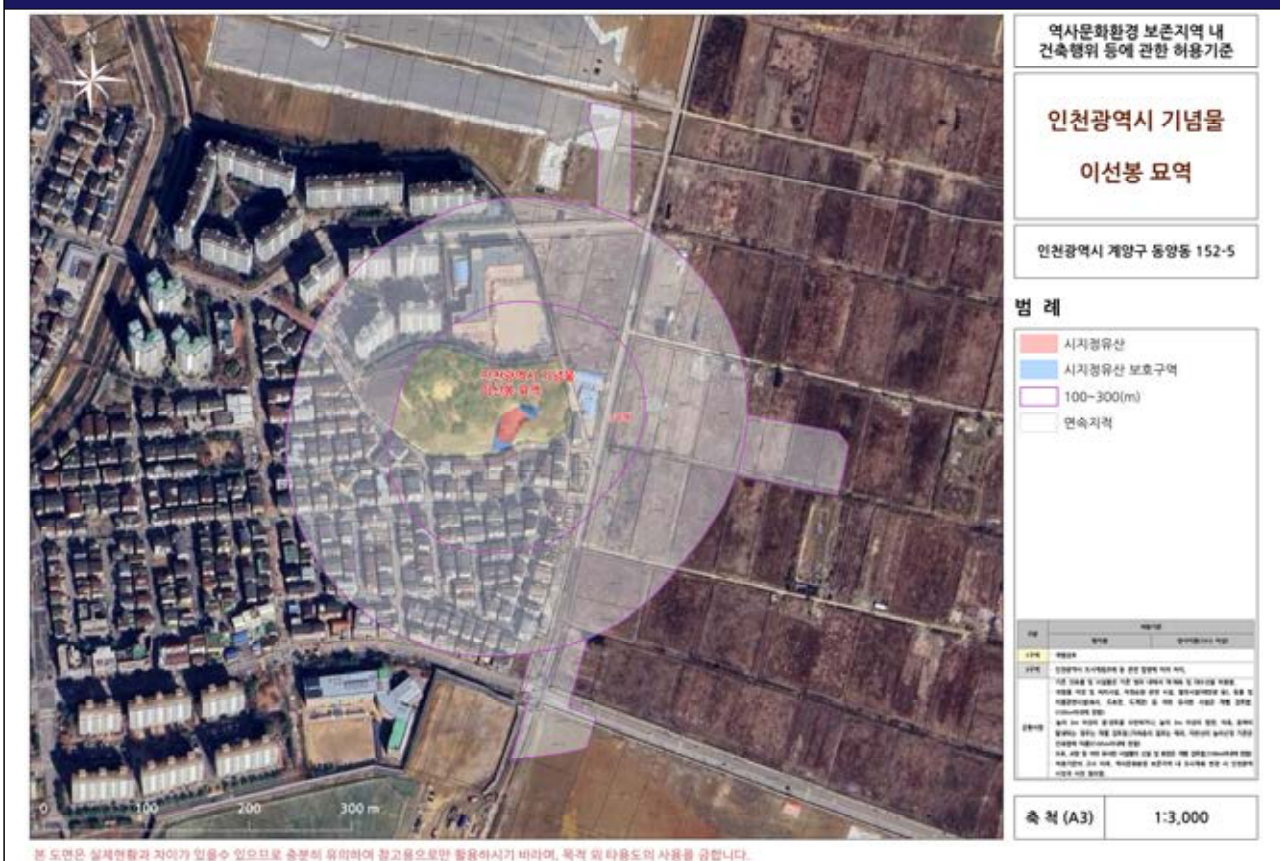
■ 이선봉 구역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9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변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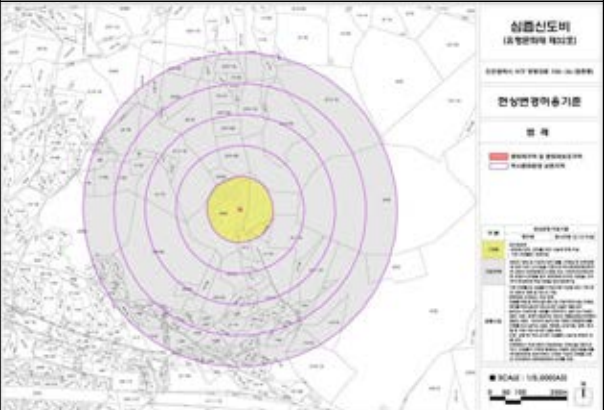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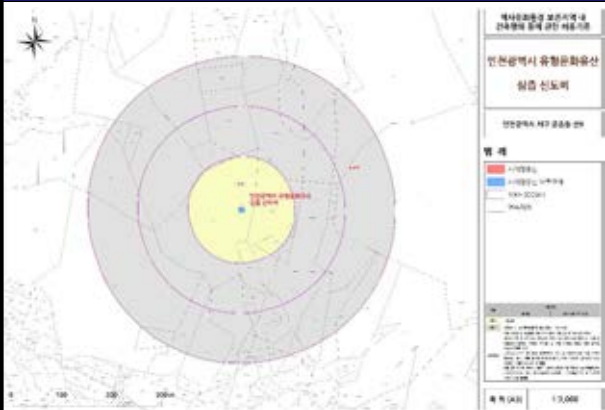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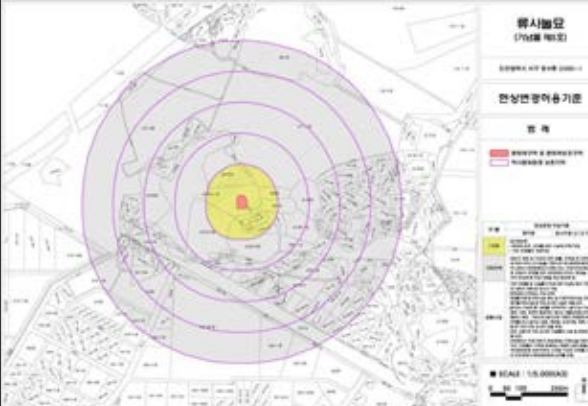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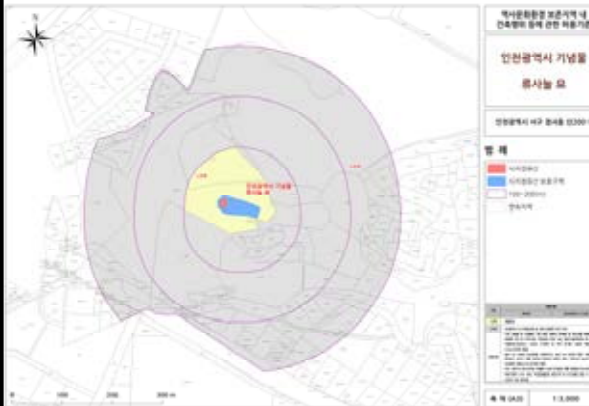


5.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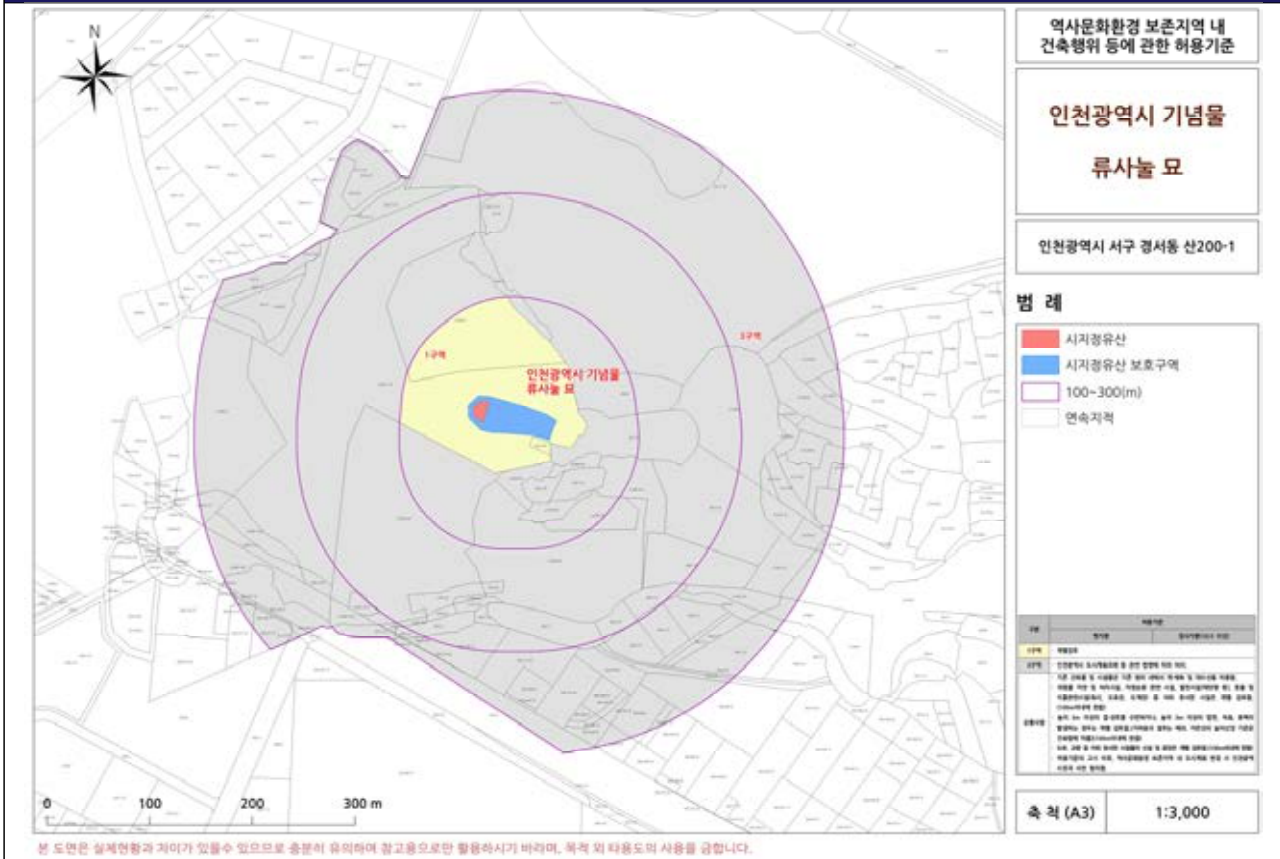
■ 심층 신도비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도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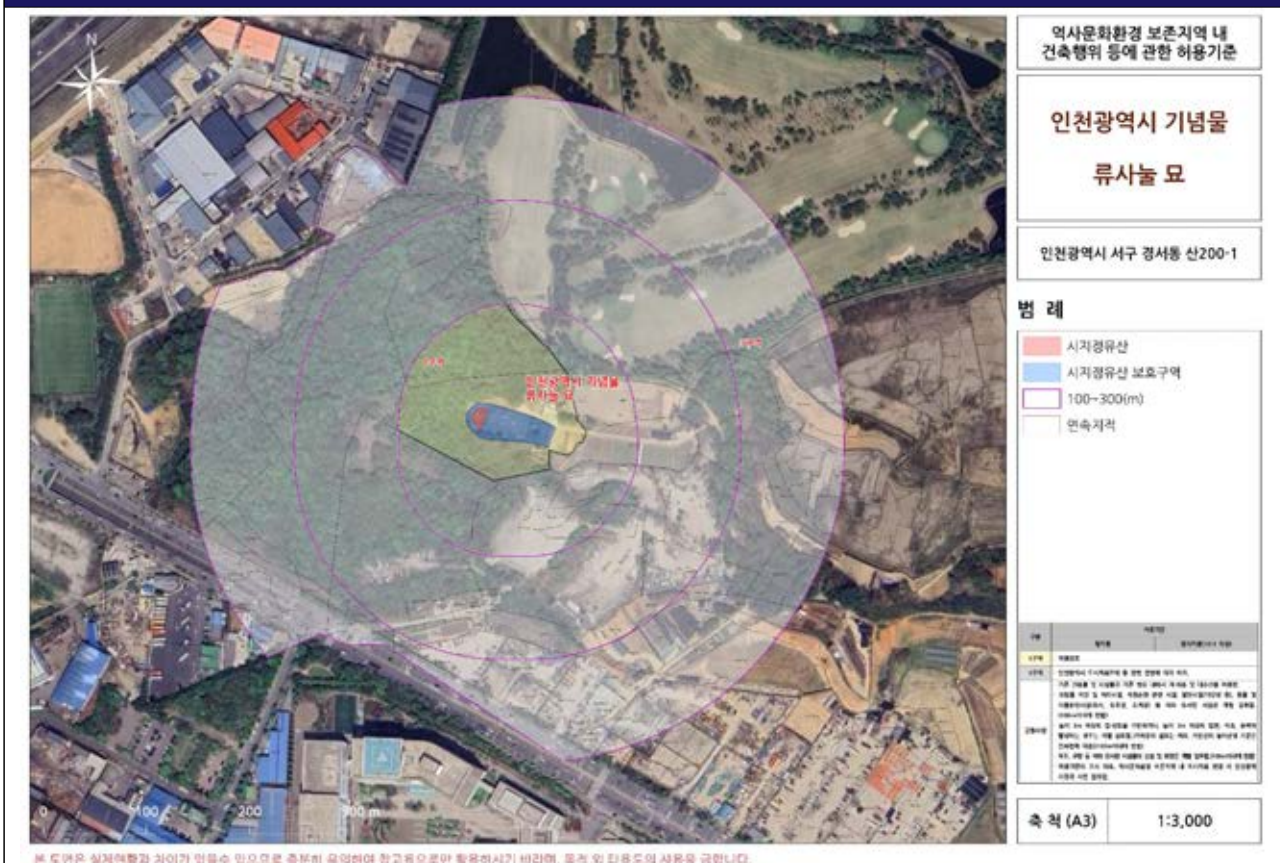
■ 류사늘 묘

구분		기고시(2010.04.14.)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고시문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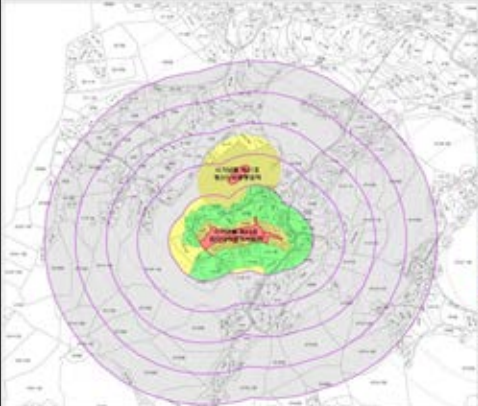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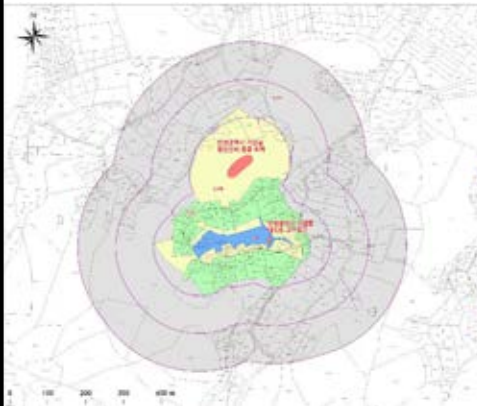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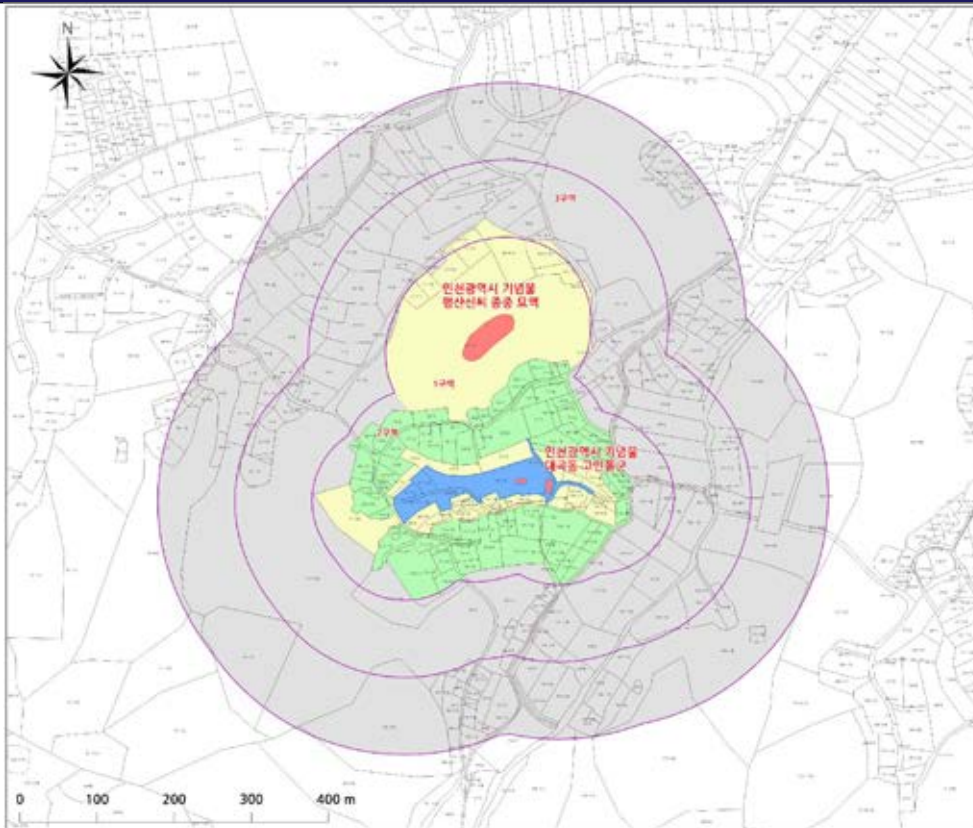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 대곡동 고인돌군 외1개소

구분	기고시(2015.09.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경인대곡동지석묘군 (798동 제33호)</p> <p>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현상변경허용기준</p> <p>범 계</p> <p>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0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경인대곡동지석묘군 (798동 제33호)</p> <p>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현상변경허용기준</p> <p>범 계</p> <p>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2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3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4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5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6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7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8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1.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2.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3.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4.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5.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6.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7.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8.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99.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p>100. 문화재보호구역(2015.9.7.)</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4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4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기념물 평산신씨 종중 묘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1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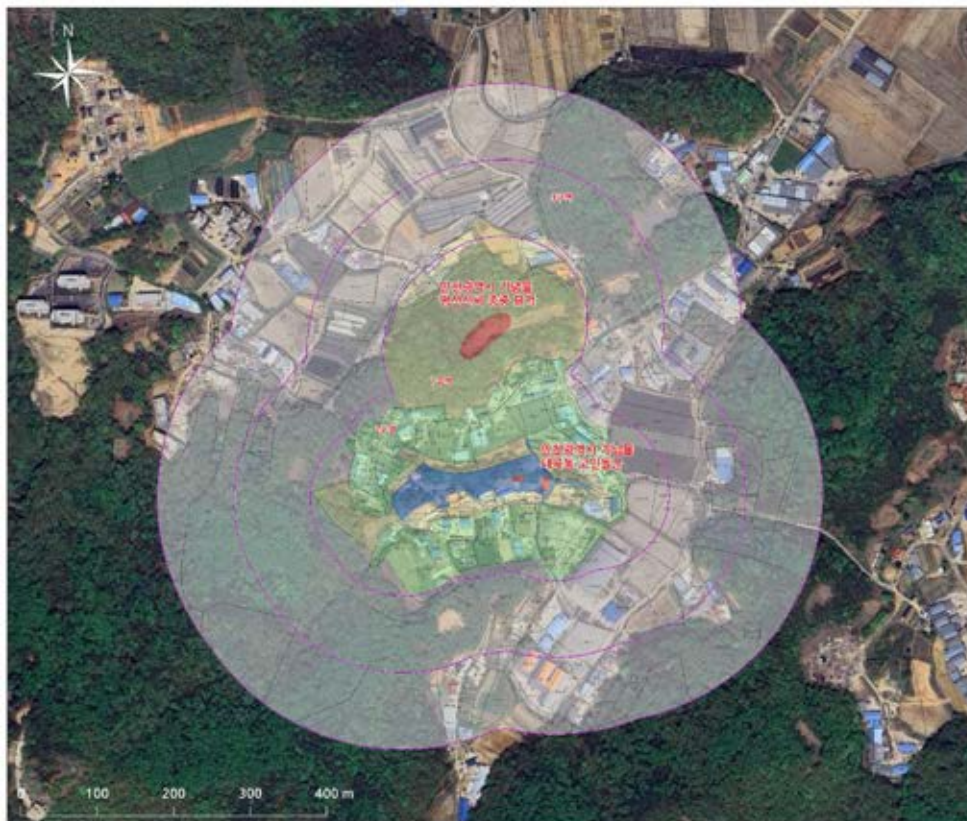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설명
100m	황색	황색(100m) 구역
300m	초록색	초록색(300m) 구역
연속지적	회색	연속지적

속척 (A3) 1: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기념물 평산신씨 종중 묘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1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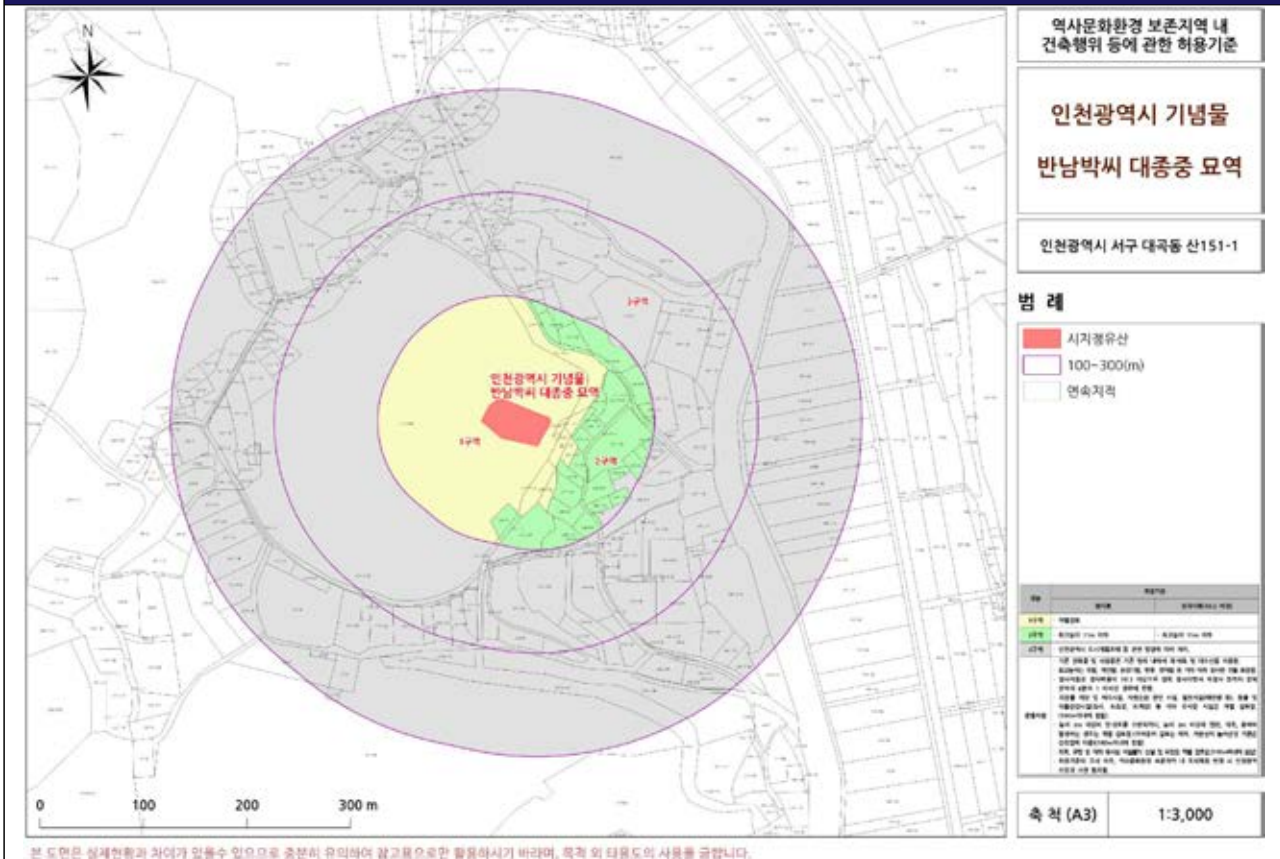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설명
100m	황색	황색(100m) 구역
300m	초록색	초록색(300m) 구역
연속지적	회색	연속지적

속척 (A3) 1: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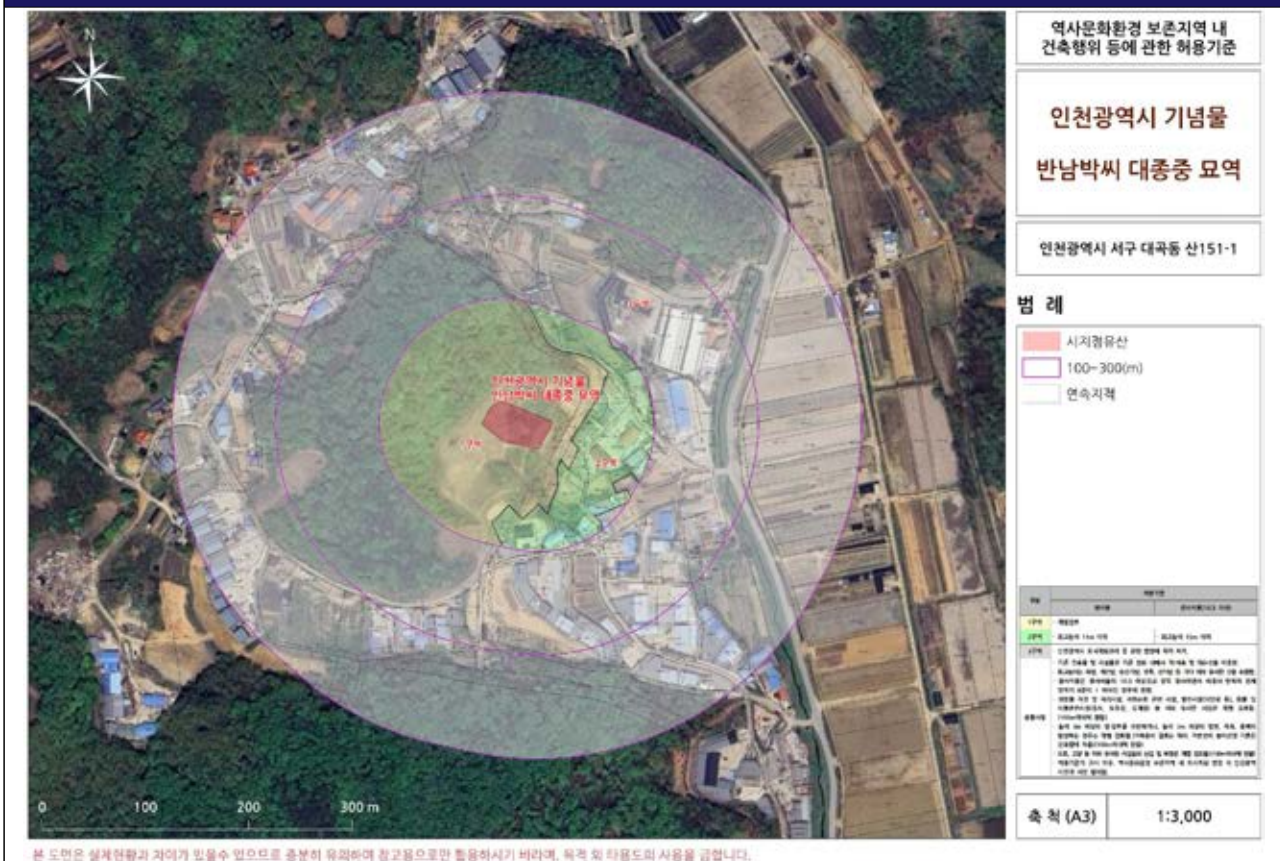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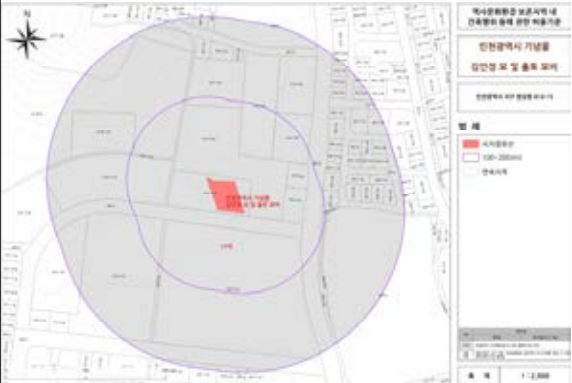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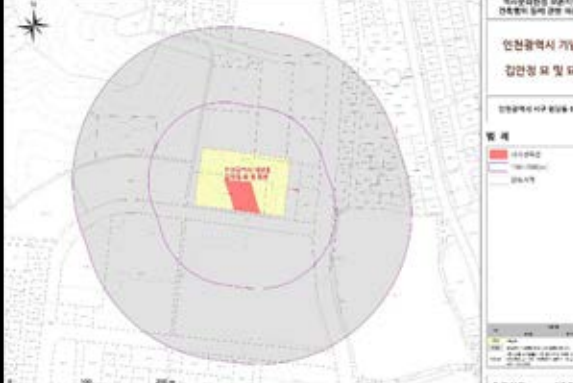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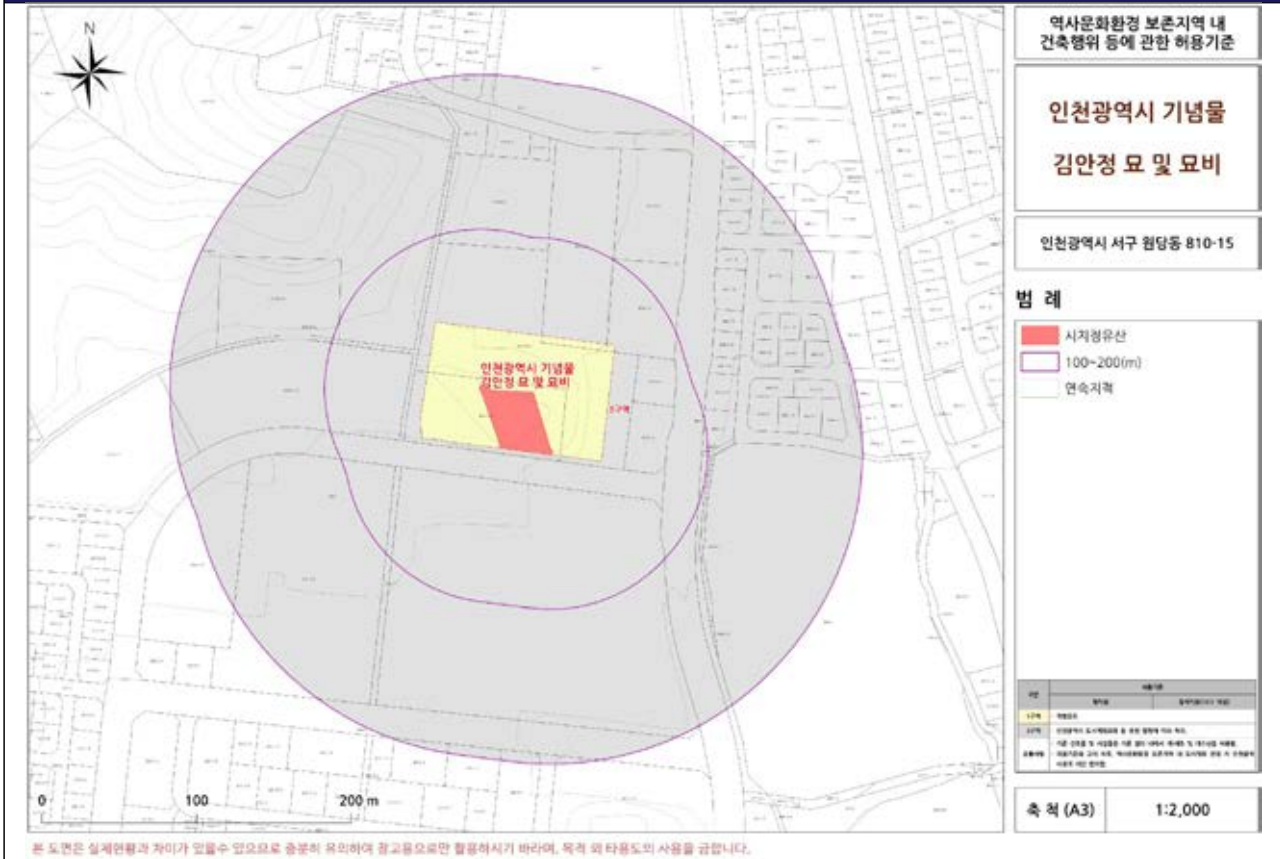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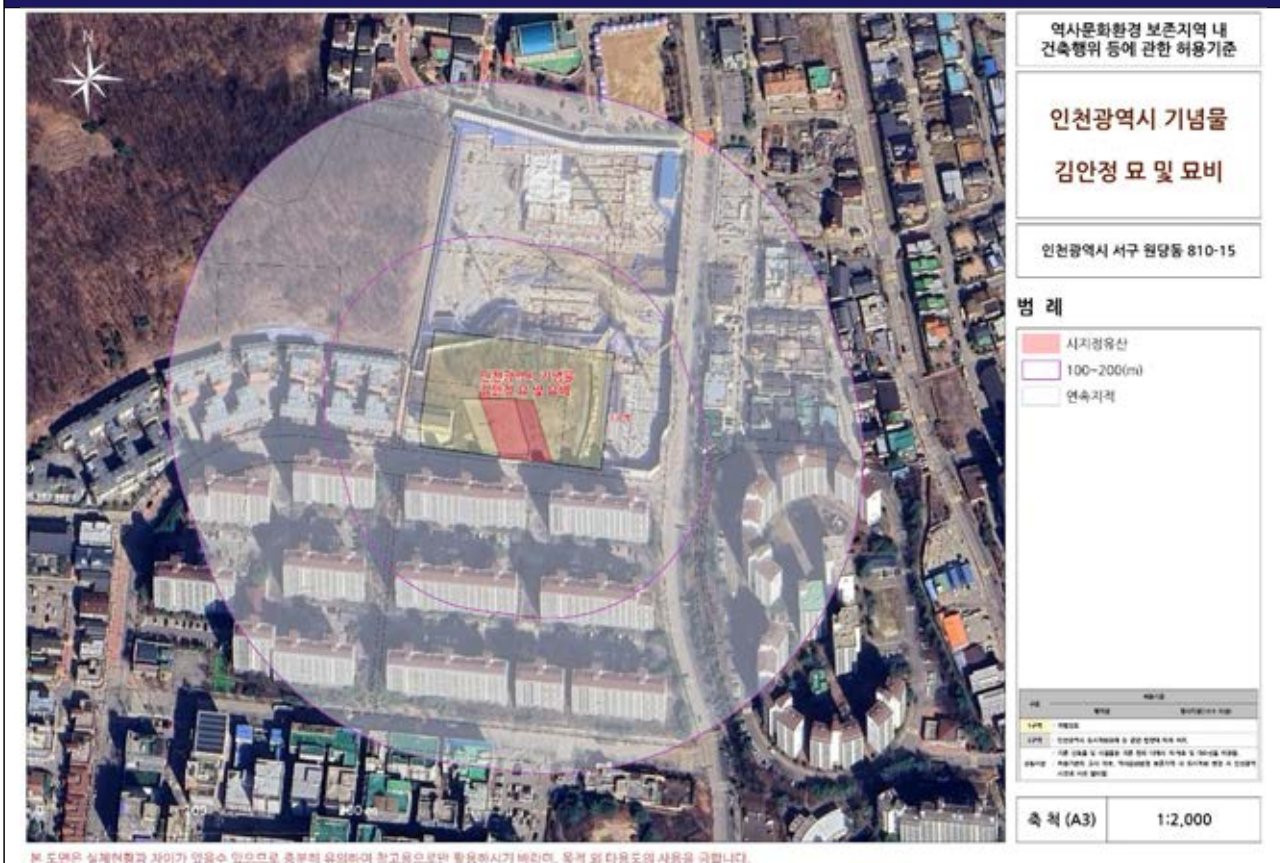
■ 김안정 묘 및 묘비

구분		기고시(2024.06.10.)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허용기준</p> <p>인천광역시 기념물</p> <p>김안정 묘 및 묘비</p> <p>인천광역시 수목림종류관리지</p> <p>용적률</p>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p> <p>100~200㎡</p> <p>일반지역</p> <p>축적률</p> <p>1:2,000</p>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허용기준</p> <p>인천광역시 기념물</p> <p>김안정 묘 및 묘비</p> <p>인천광역시 수목림종류관리지</p> <p>용적률</p>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p> <p>100~200㎡</p> <p>일반지역</p> <p>축적률</p> <p>1:2,000</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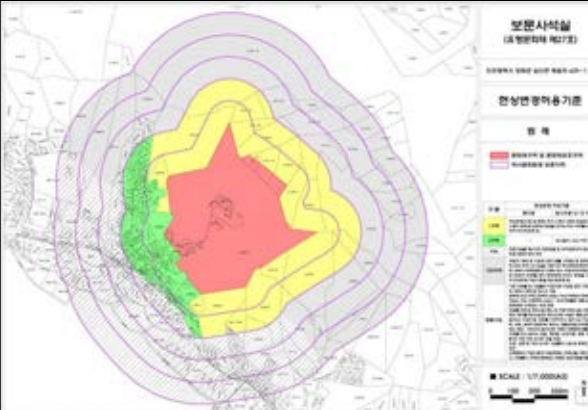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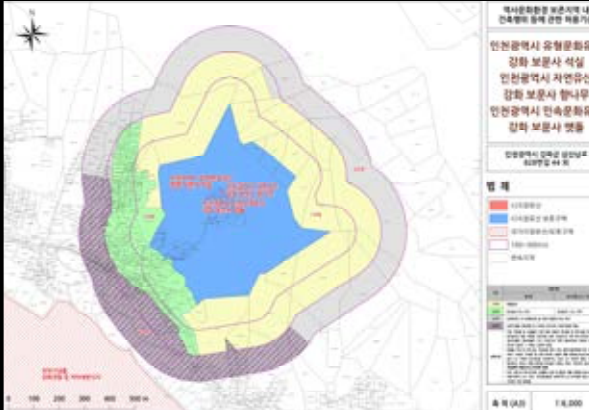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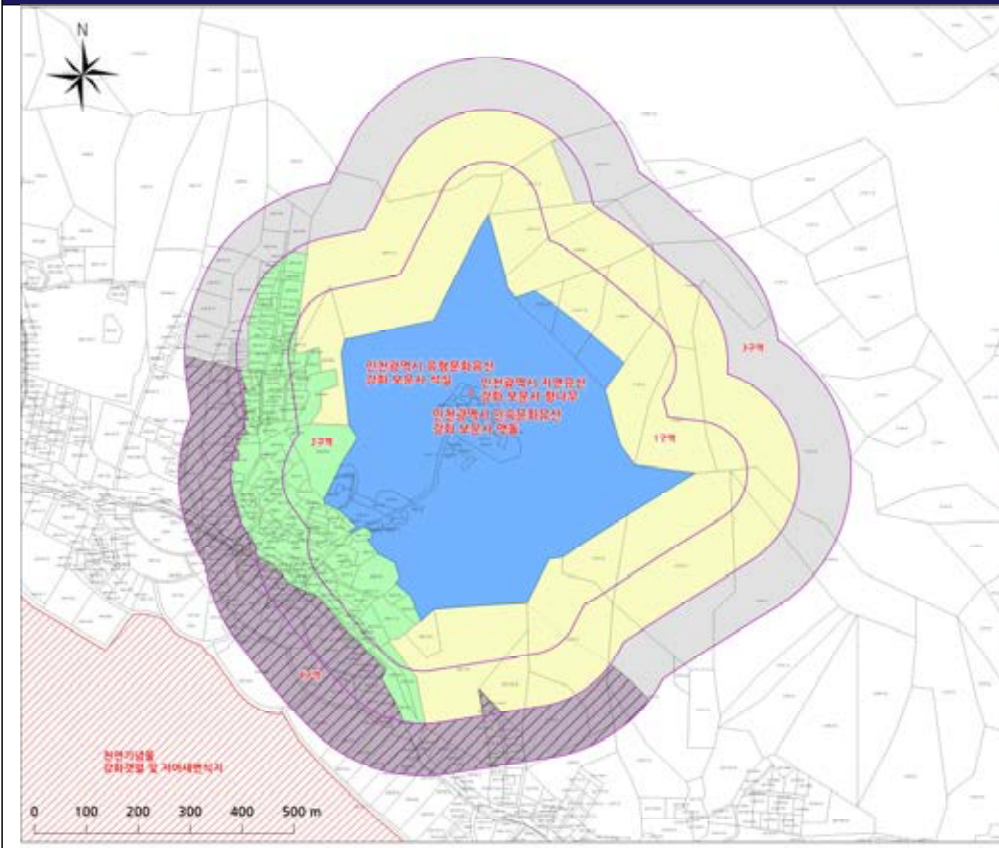


6. 강화군

■ 강화 보문사 석실 외 2개소

구분	기고시(2021.07.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보문사석실 (국립문화재 제217호)</p> <p>현상변경허용기준</p> <p>범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문사석실 보문사석실 주변구역 보문사석실 외곽구역 보문사석실 외곽구역 외곽구역 <p>SCALE 1:10,000</p>		<p>허용기준 조정(안)</p> <p>보문사석실</p> <p>보문사석실 주변구역</p> <p>보문사석실 외곽구역</p> <p>보문사석실 외곽구역 외곽구역</p> <p>SCALE 1:10,000</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2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현상 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 강화 보문사 향나무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맷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남로 828번길 44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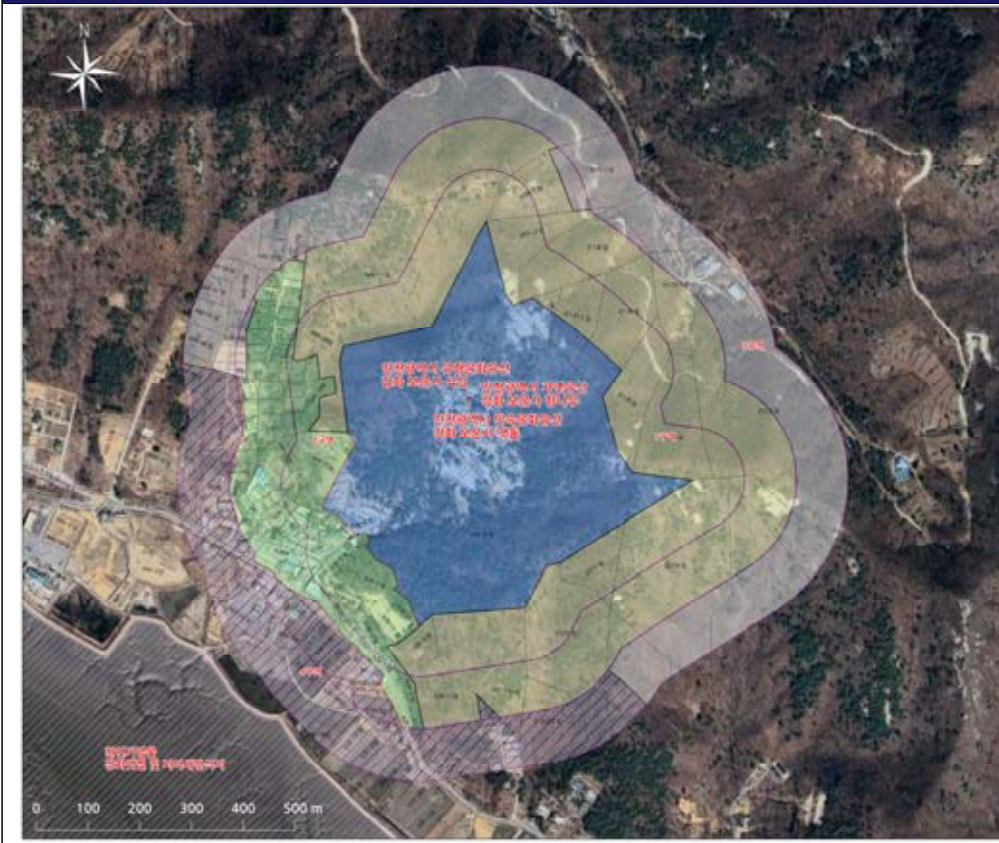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비고
1구역	시지정유산	경상남도(13)번
2구역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경상남도(13)번
3구역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경상남도(13)번
4구역	100~300(m)	경상남도(13)번
5구역	연속지적	경상남도(13)번

속척 (A3) 1:6,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 강화 보문사 향나무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맷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36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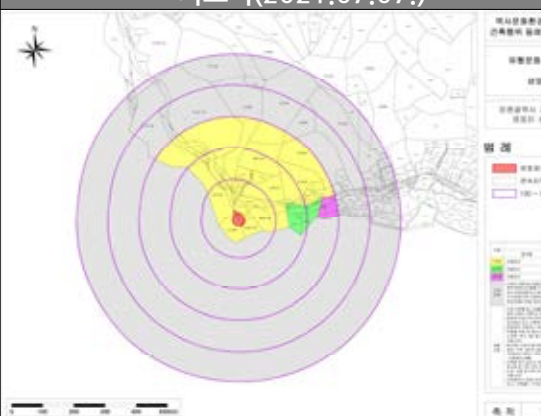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범례	비고
1구역	시지정유산	경상남도(13)번
2구역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경상남도(13)번
3구역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경상남도(13)번
4구역	100~300(m)	경상남도(13)번
5구역	연속지적	경상남도(1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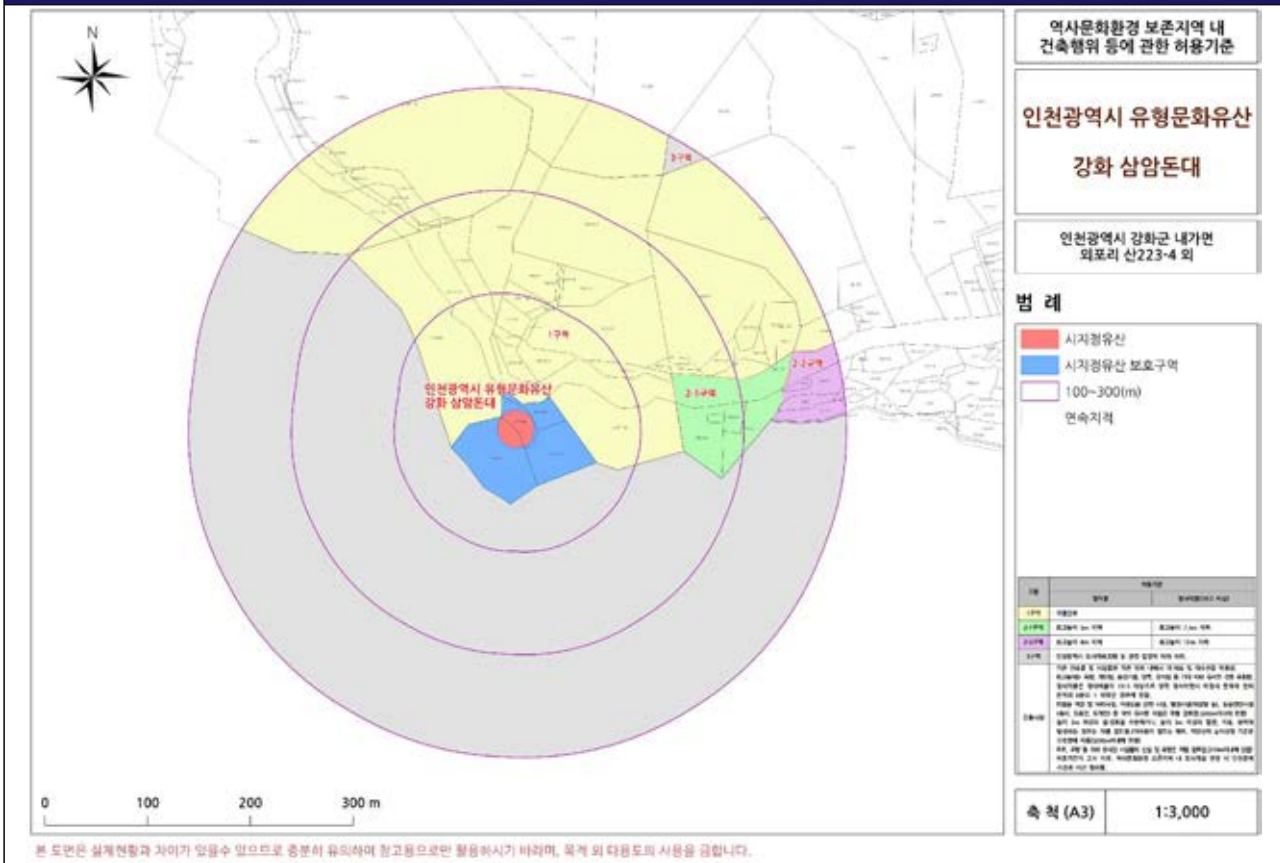
속척 (A3) 1:6,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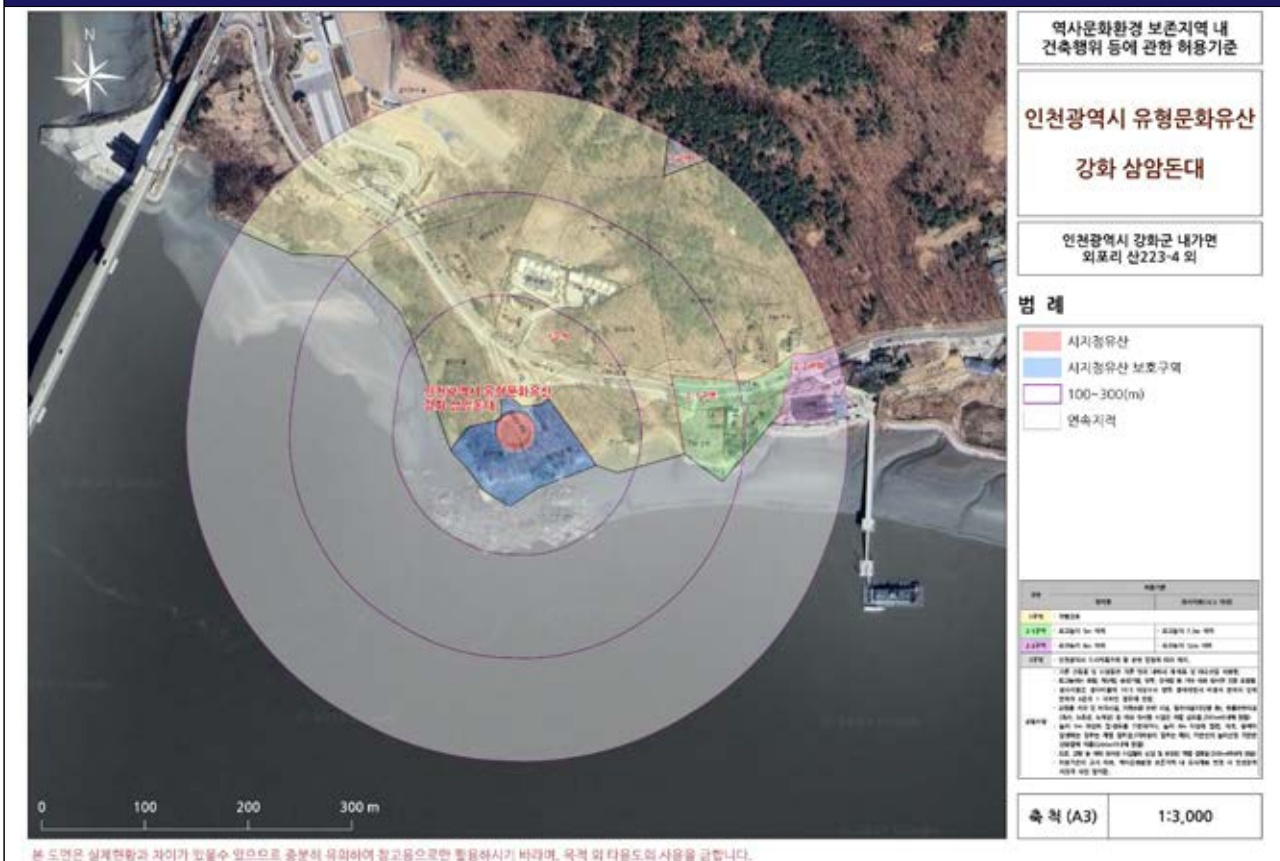
■ 강화 삼암돈대

구분	기고시(2021.07.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특수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물이 둘레 경계 적용기준</p> <p>인천광역시 용현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p> <p>인천광역시 용현문화유산 보호구역(200m)</p> <p>범 계</p> <p>100m~200m</p> <p>200m~300m</p> <p>300m~400m</p> <p>400m~500m</p> <p>500m 이상</p> <p>축척 1:5,000</p>		<p>특수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물이 둘레 경계 적용기준</p> <p>인천광역시 용현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p> <p>인천광역시 용현문화유산 보호구역(200m)</p> <p>범 계</p> <p>100m~200m</p> <p>200m~300m</p> <p>300m~400m</p> <p>400m~500m</p> <p>500m 이상</p> <p>축척 1:3,000</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5m 이하 	2-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3m 이하 	2-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2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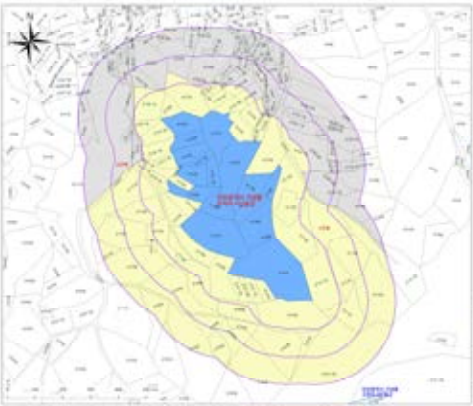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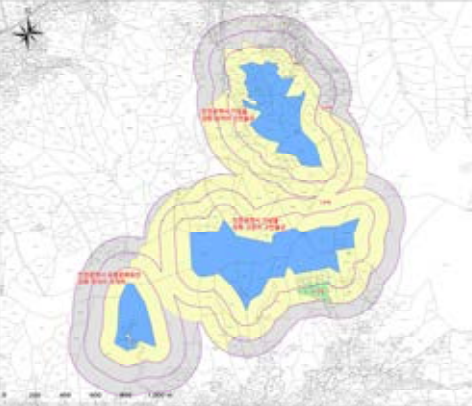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 강화 적석사 사적비 외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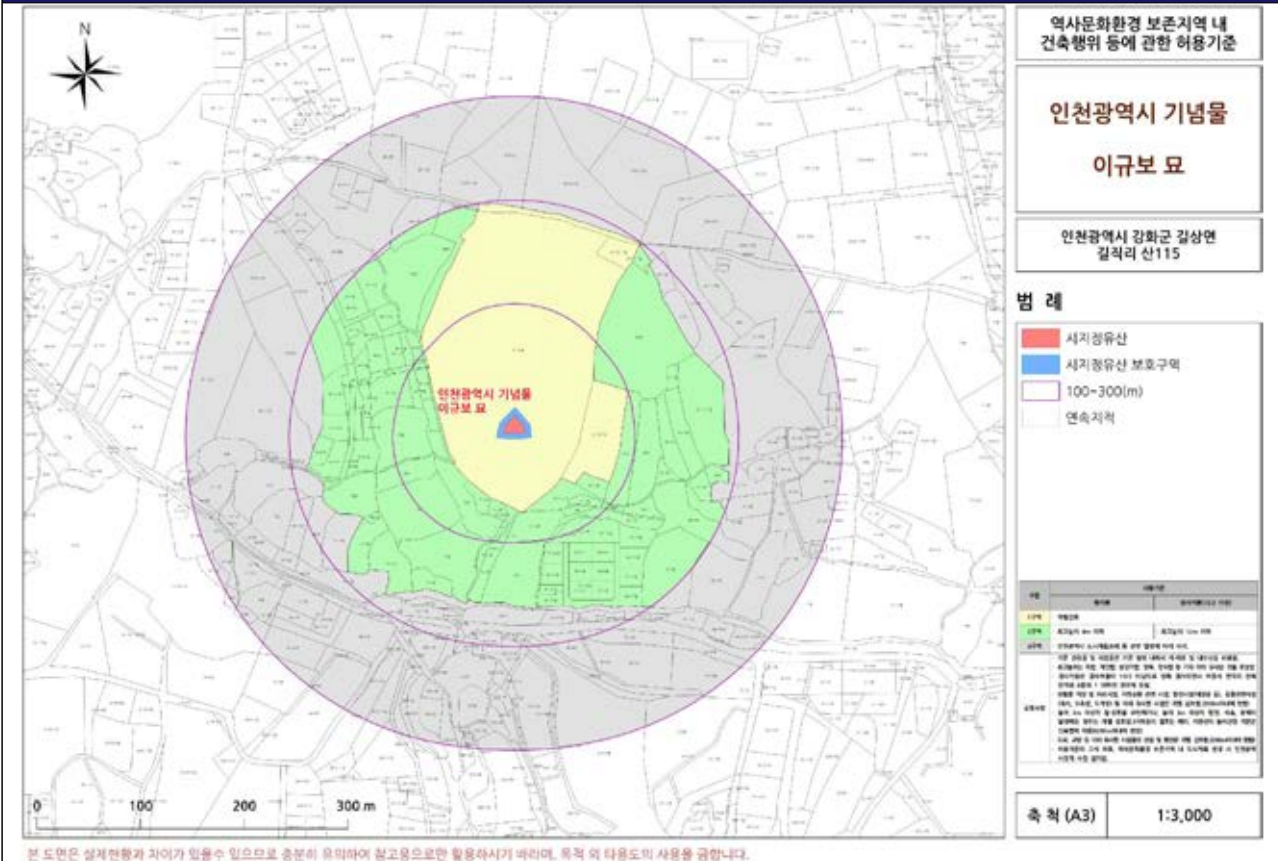
구분	기고시(2015.09.07.)	기고시(2021.07.07.)				
고시도						
고시문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구분		기고시(2024.06.10.)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 제한 허용기준</p> <p>인천광역시 기념물 일거리고민물군</p> <p>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11호</p> <p>별 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00~200m 경사지각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 제한 허용기준</p> <p>인천광역시 기념물 일거리고민물군</p> <p>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11호</p> <p>별 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00~200m 경사지각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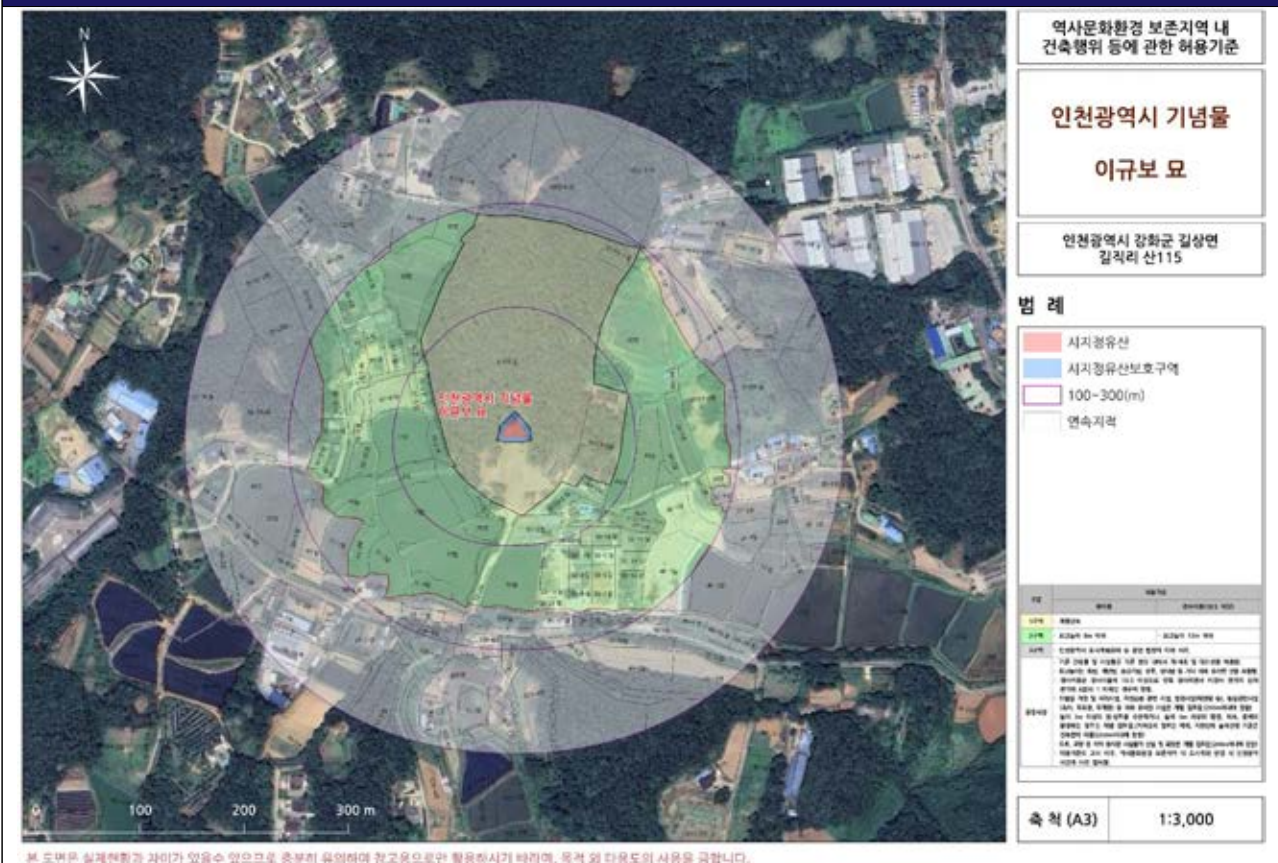
■ 이규보 묘

구분	기고시(2010.04.14.)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이규보묘 (798을 제13호)</p> <p>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p> <p>현행변경허용기준</p> <p>분 계</p> <p>1. 1구역: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p> <p>2. 2구역: -</p> <p>3. 그 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p> <p>공동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p>허용기준 조정(안)</p> <p>분 계</p> <p>1. 1구역: 개별검토</p> <p>2.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p> <p>3.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p> <p>공동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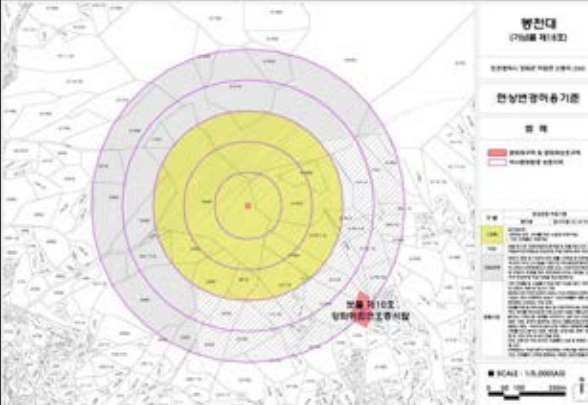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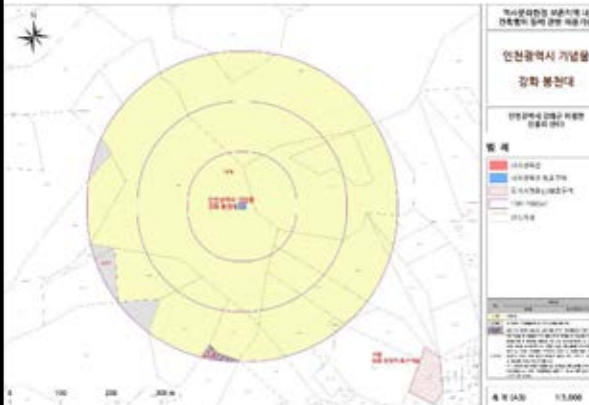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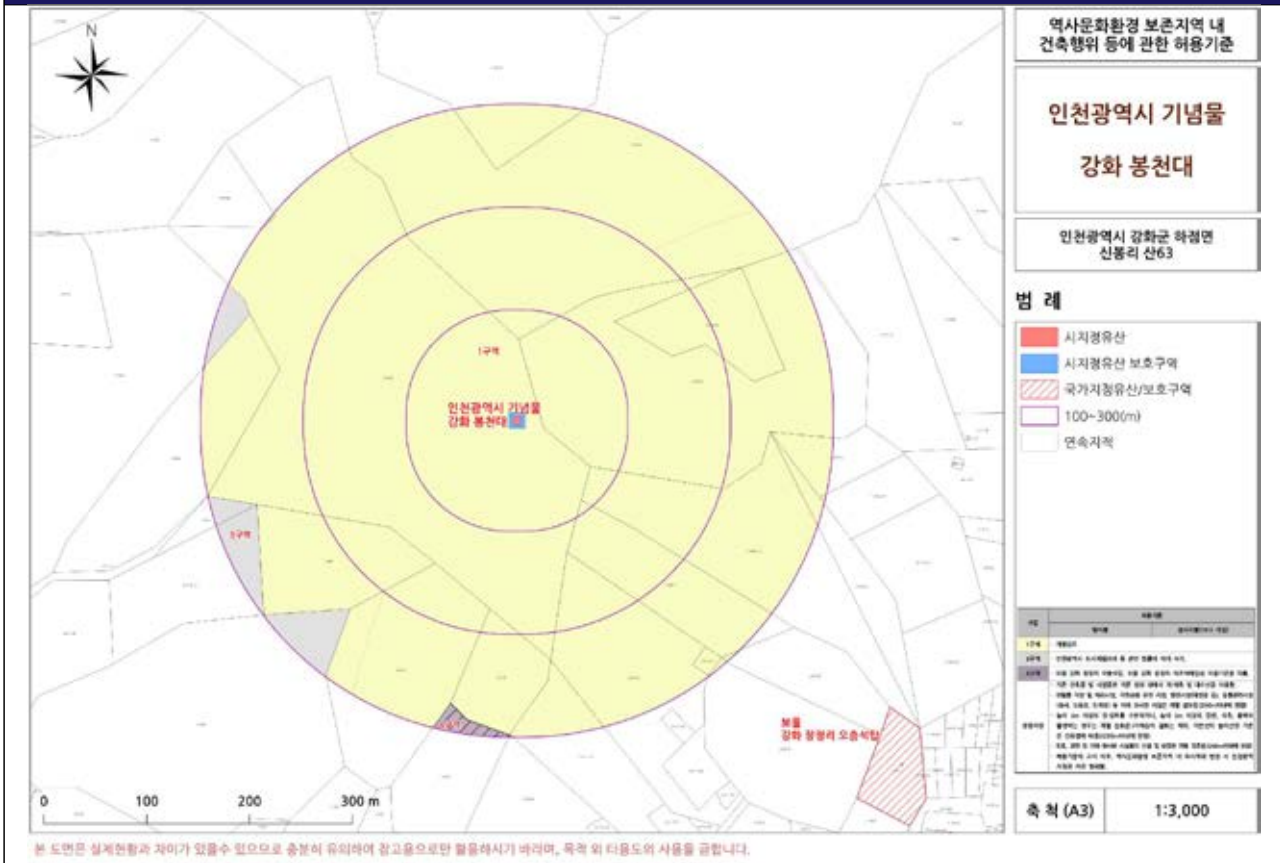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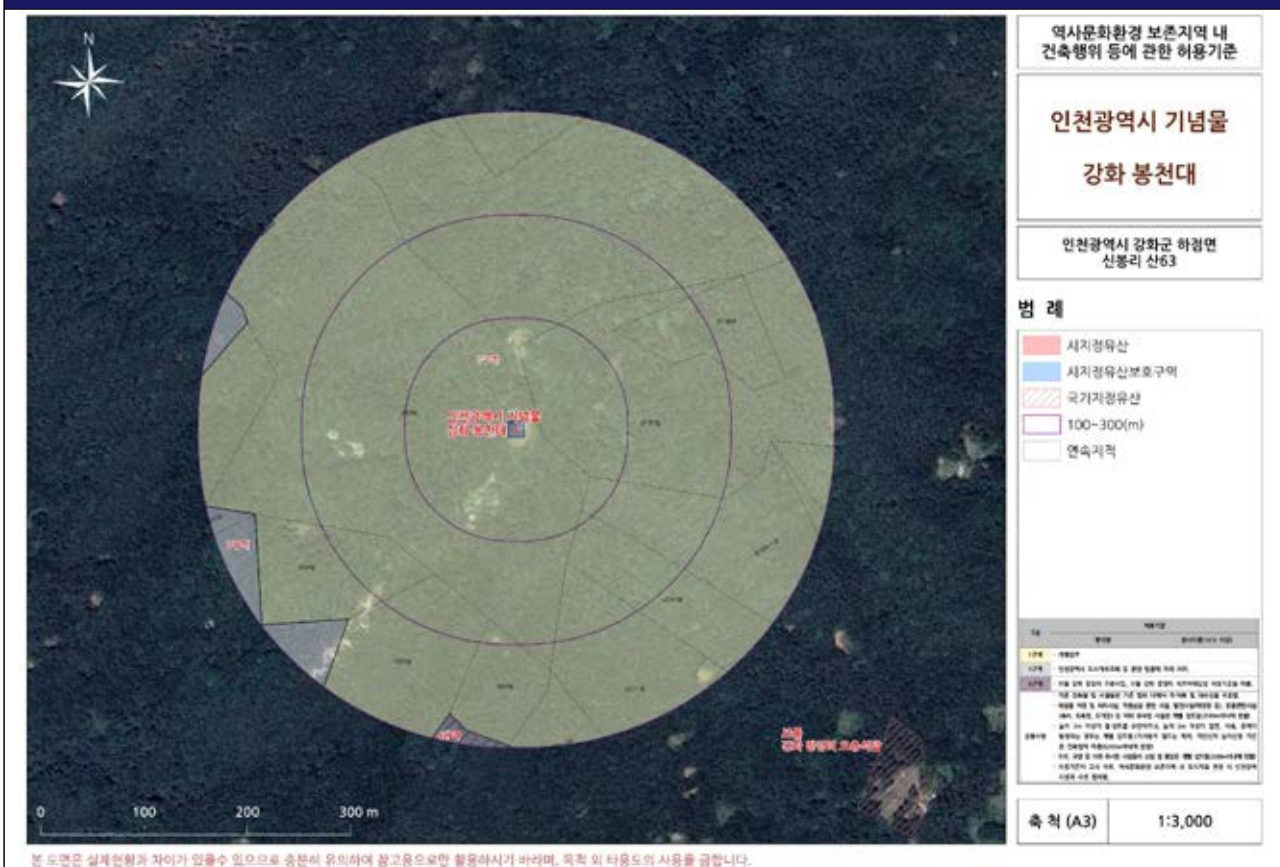
■ 강화 봉천대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고시문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물 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및 보물 제615호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물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 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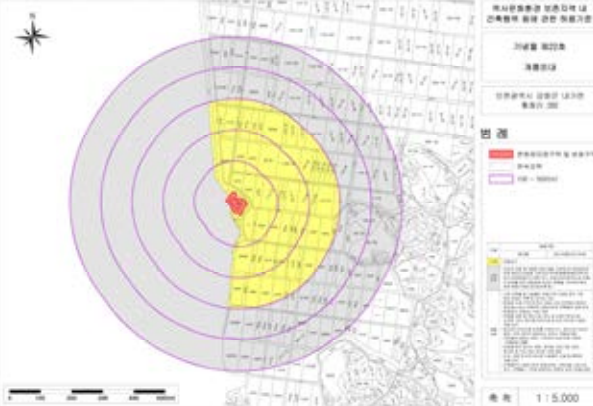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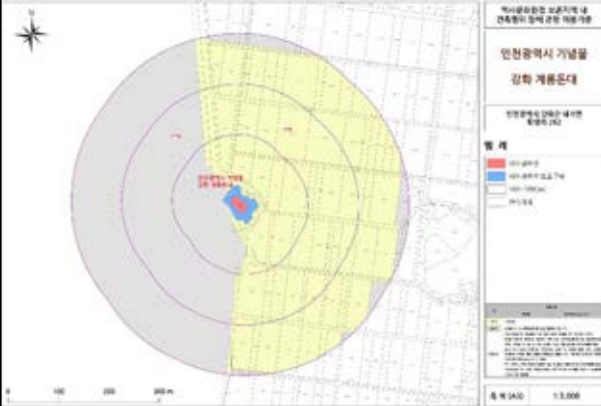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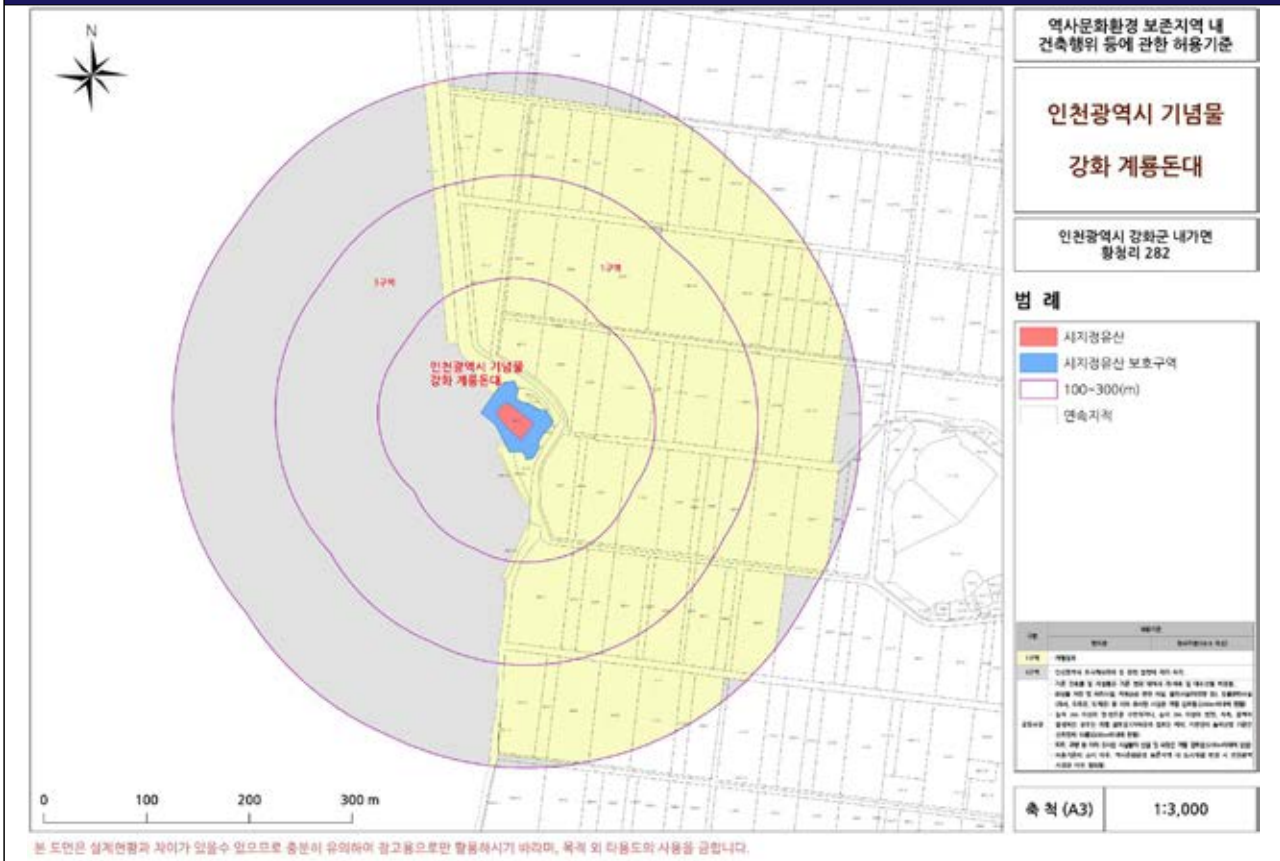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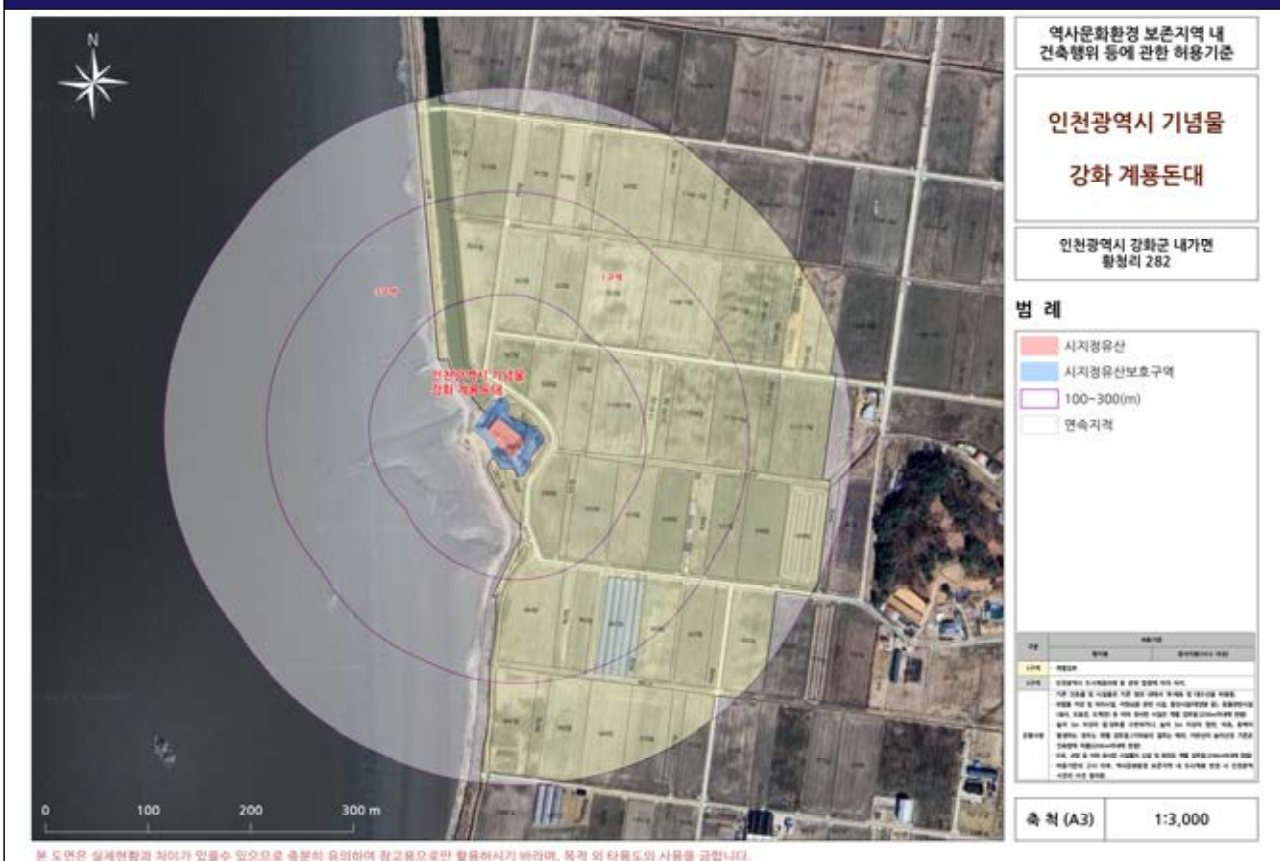
■ 강화 계룡돈대

구분		기고시(2017.07.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기고시(2017.07.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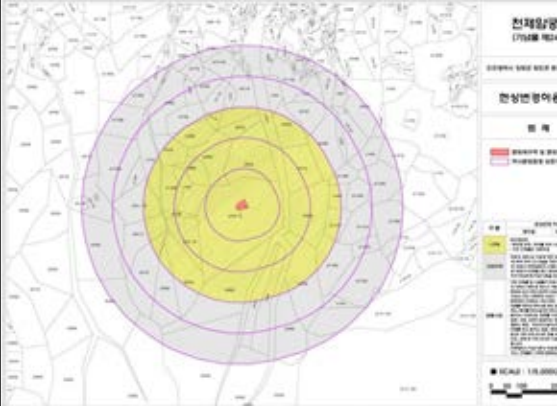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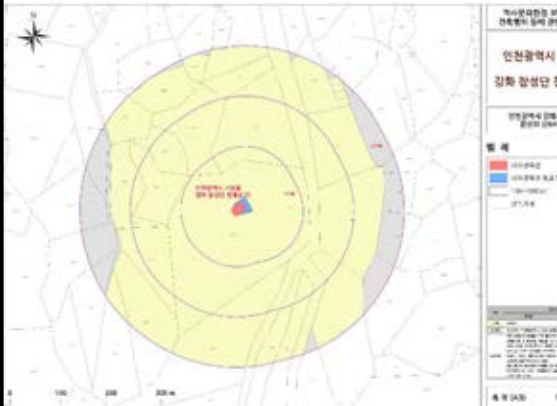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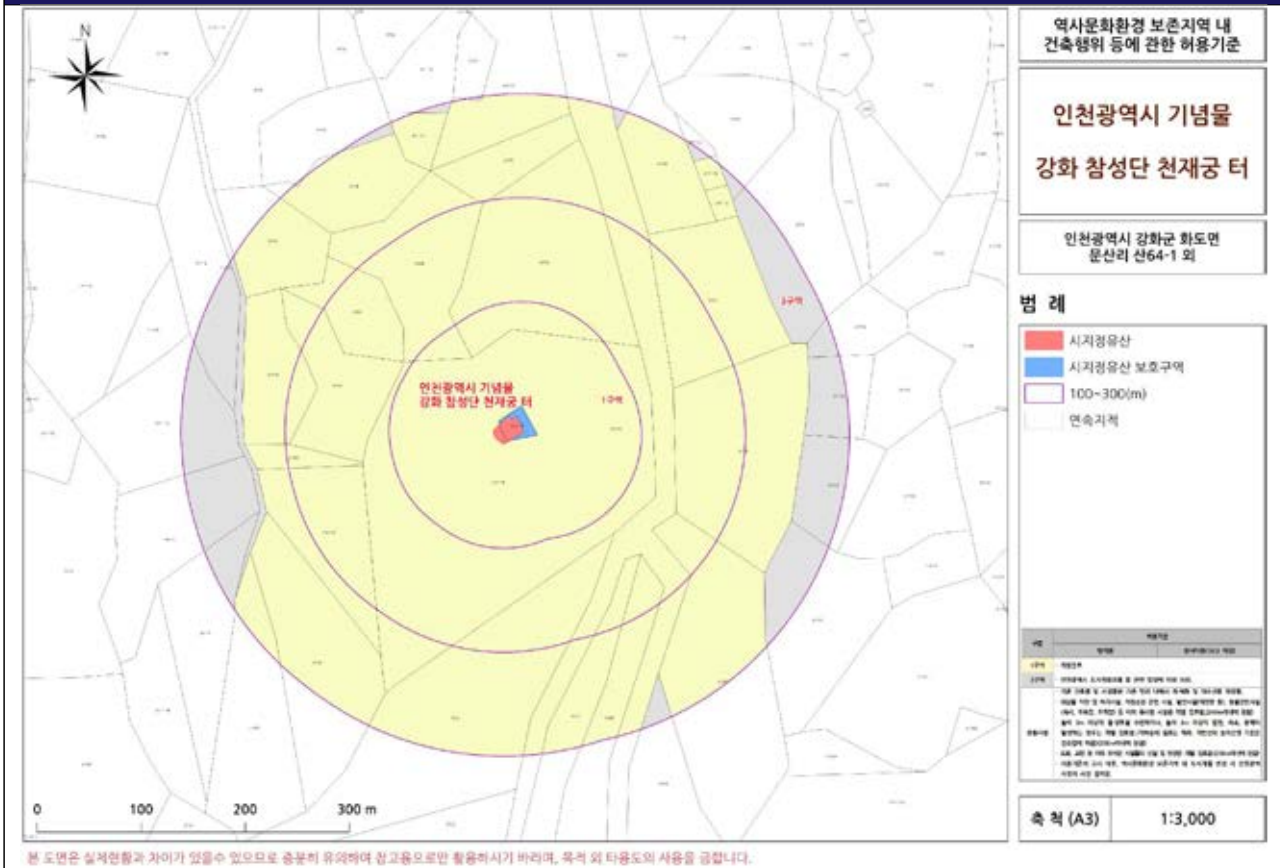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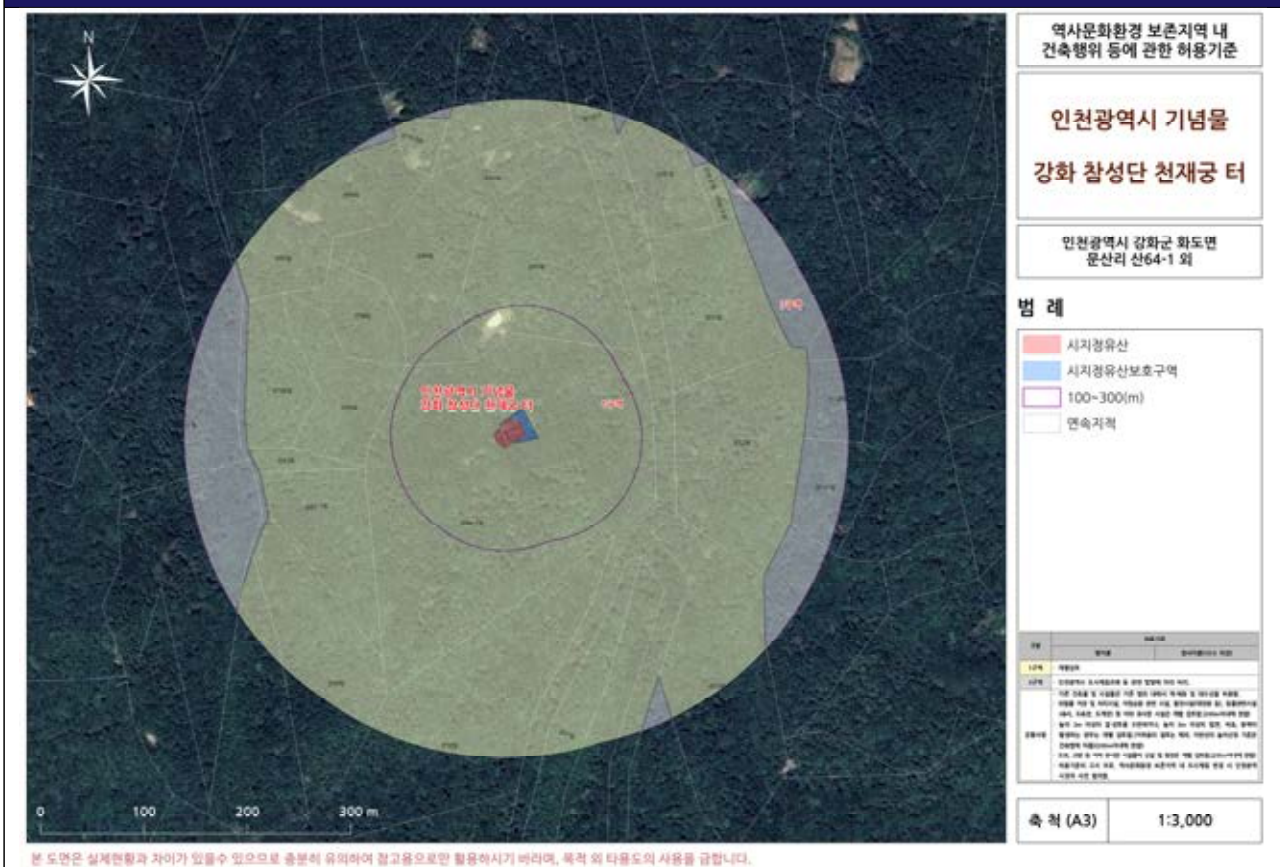
■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

구분		기고시(2015.09.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천재참성단지 (7148을 제2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00호</p>		<p>인천광역시 기념물</p> <p>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p> <p>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6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8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0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1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2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3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4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5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6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7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8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9호</p> <p>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00호</p>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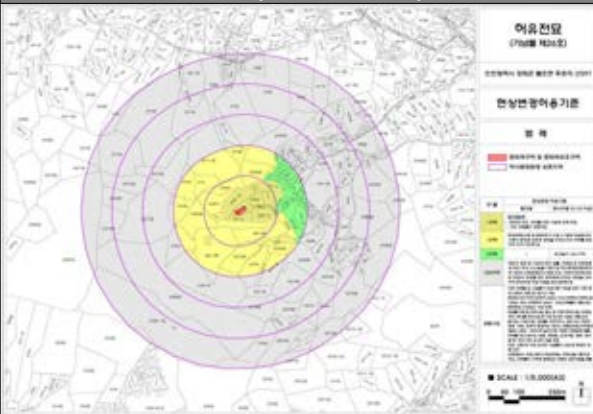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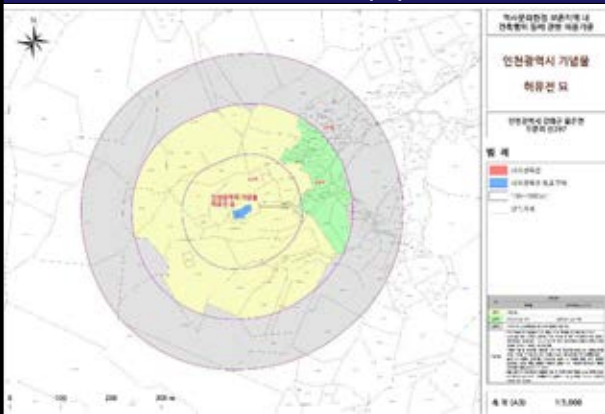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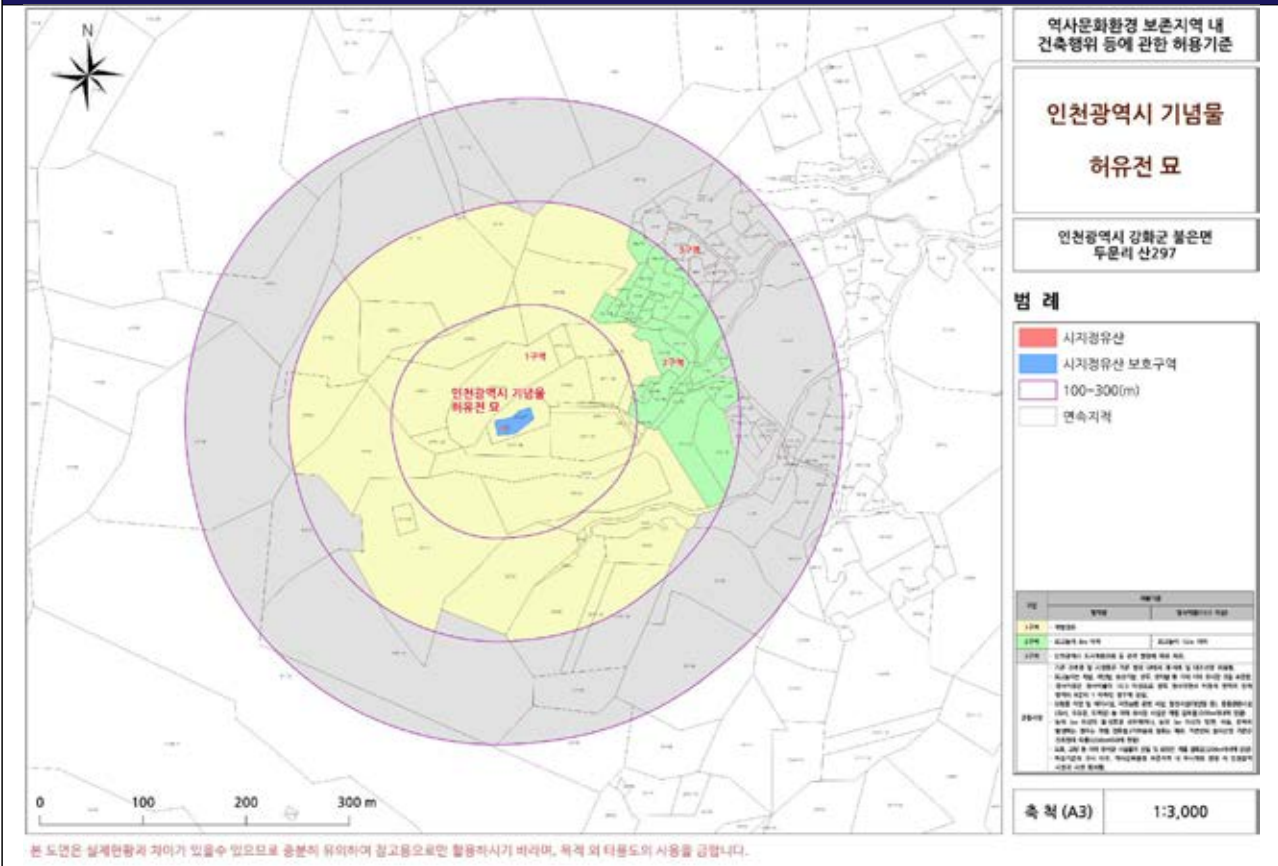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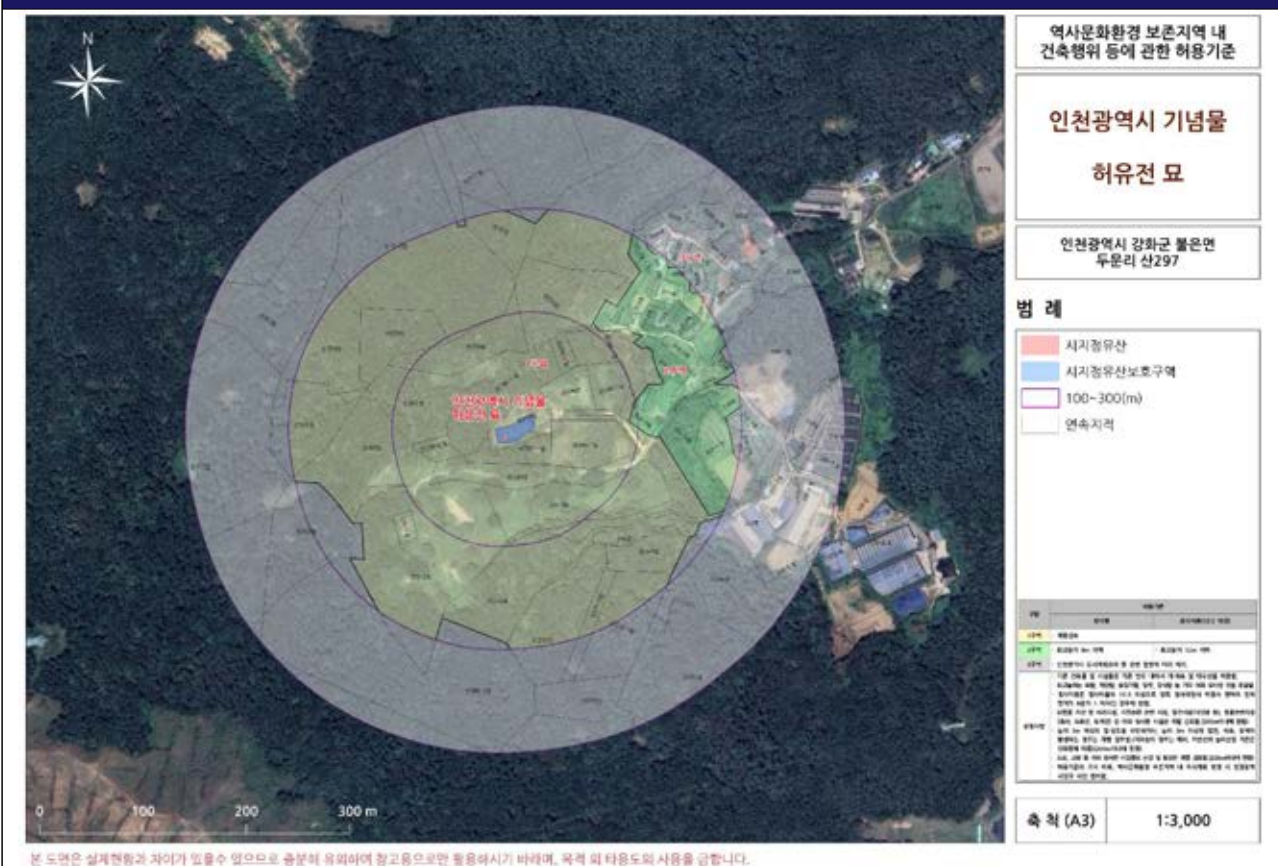
■ 허용전 묘

구분		기고시(2015.09.07.)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p>허용기준</p> <p>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p>		<p>허용기준</p> <p>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p>	
고시문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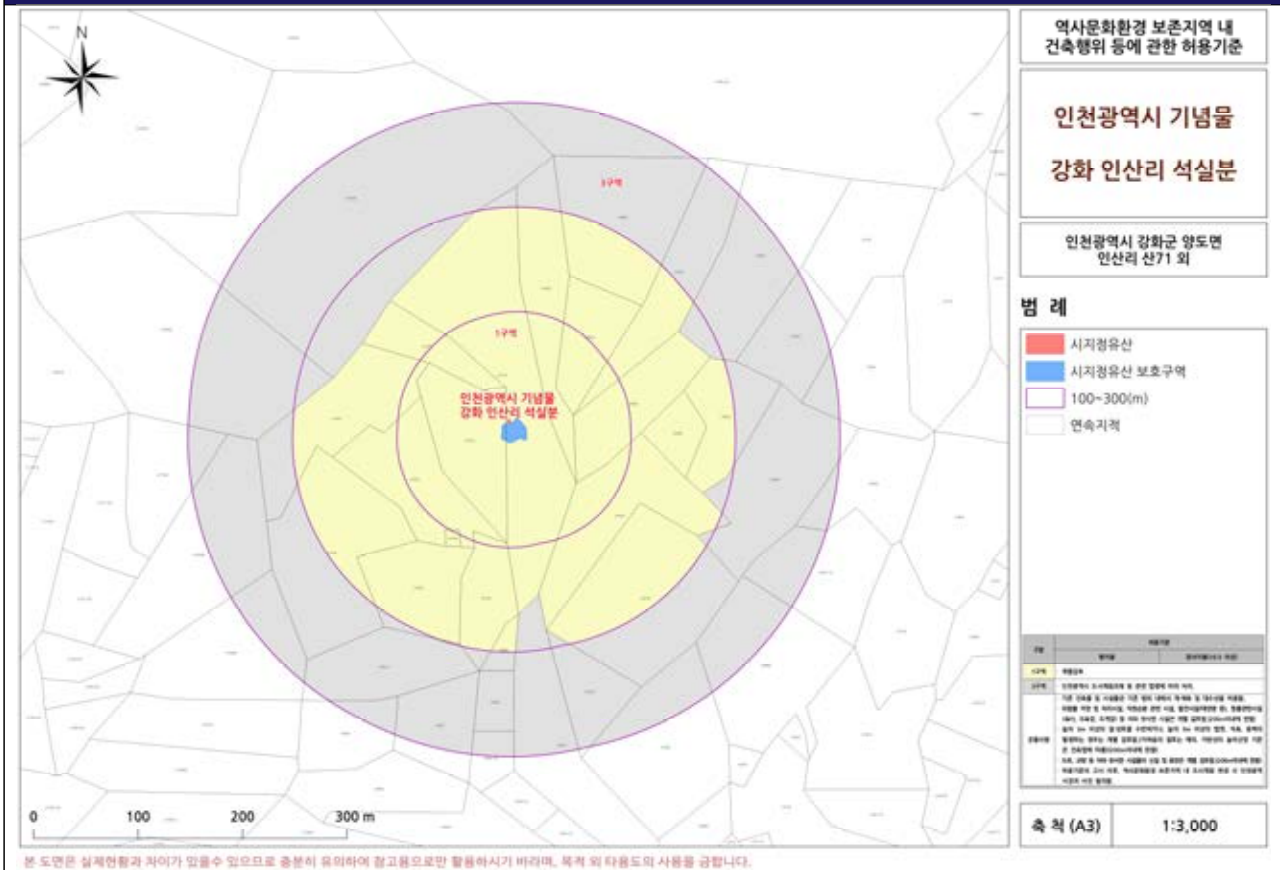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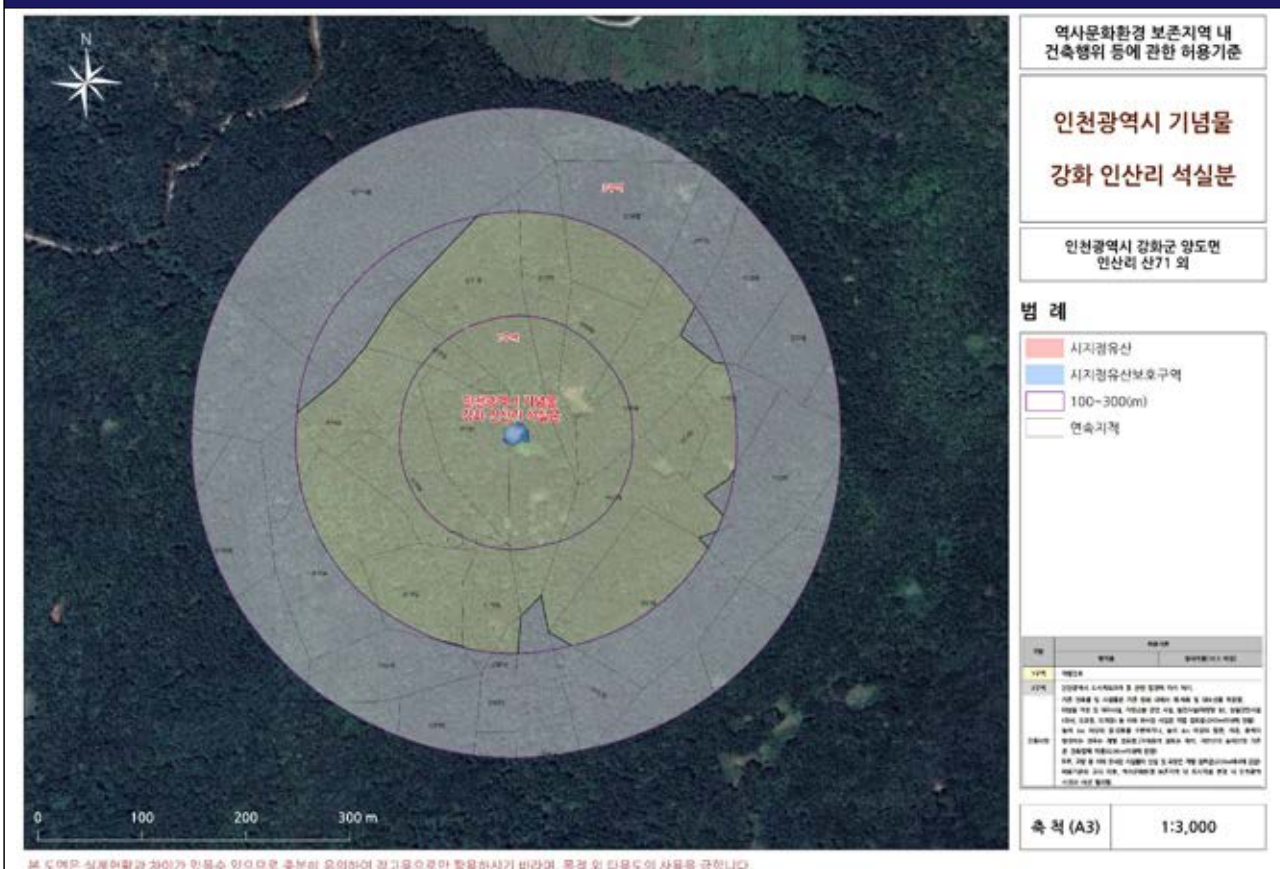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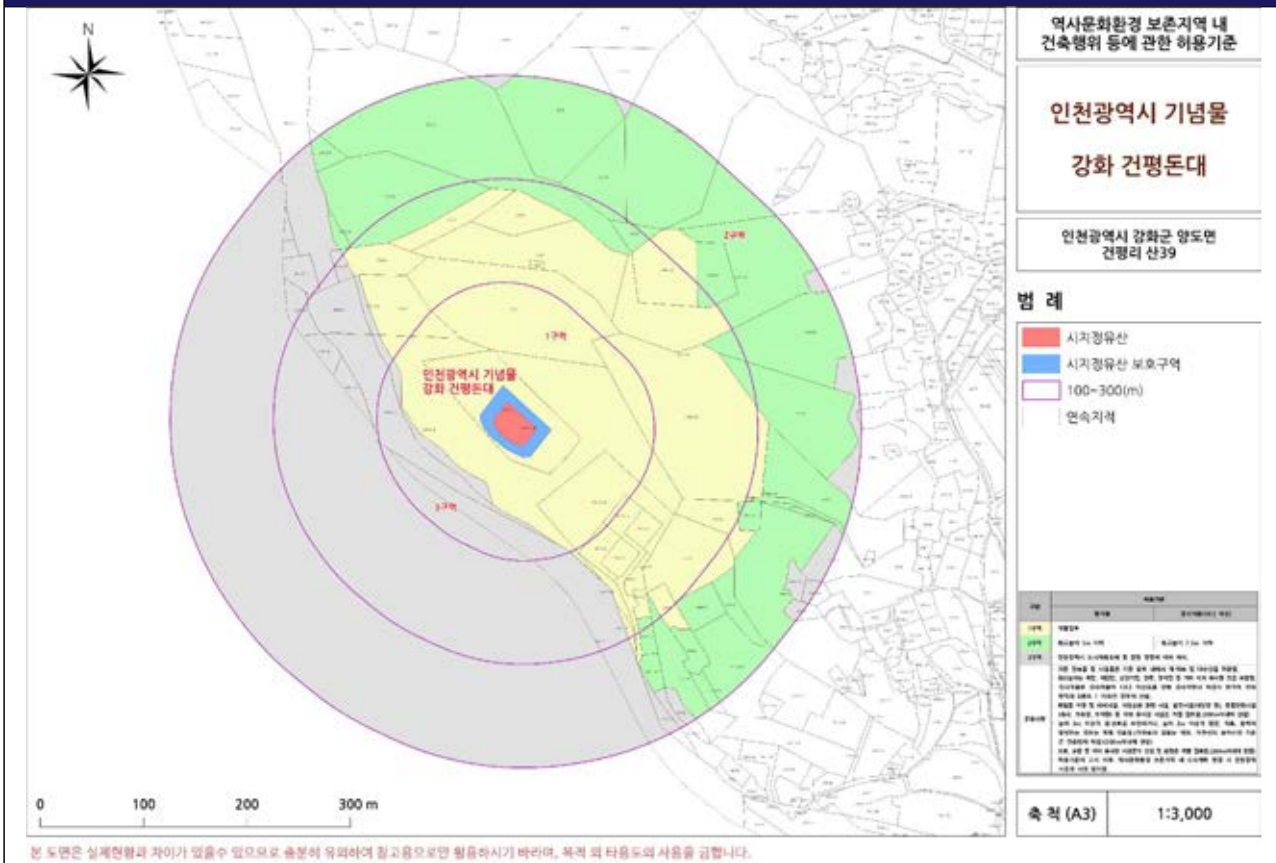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 강화 건평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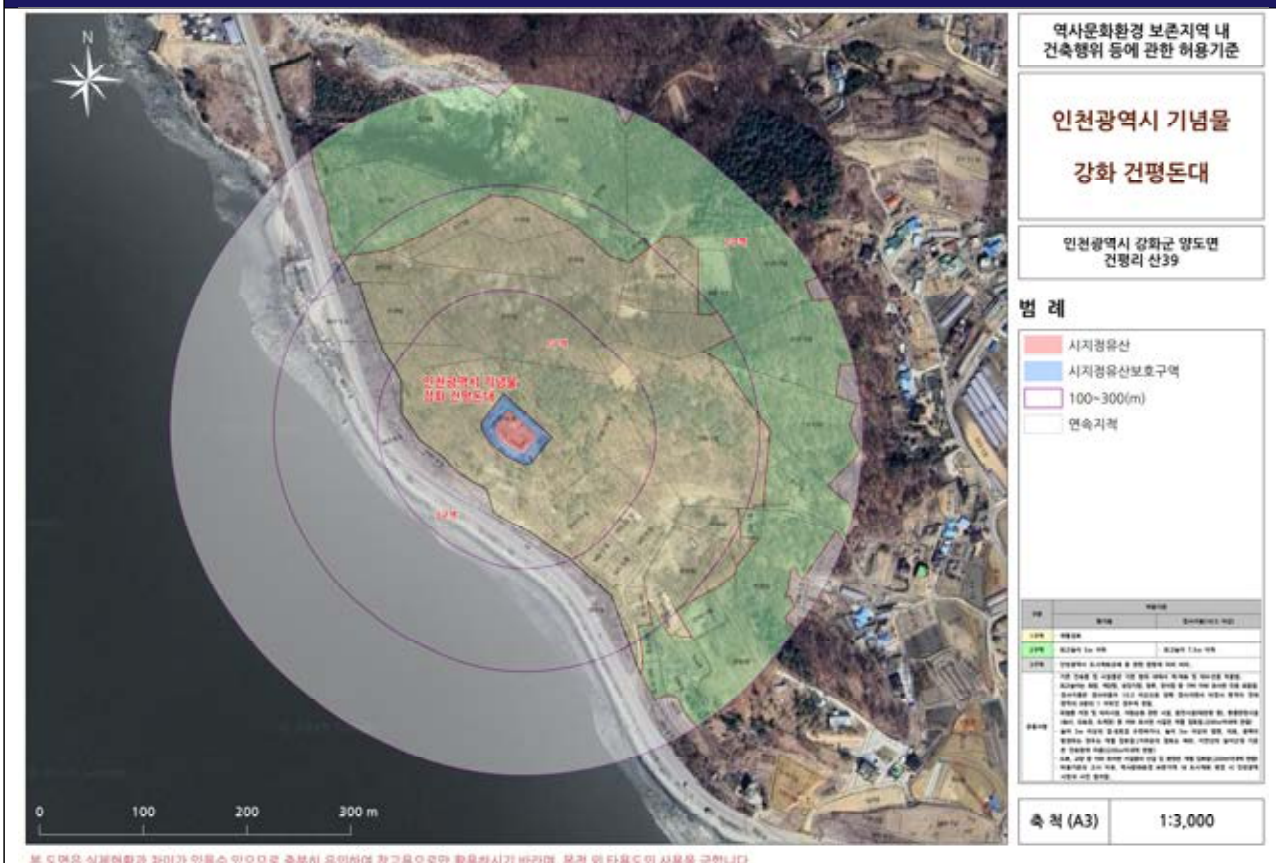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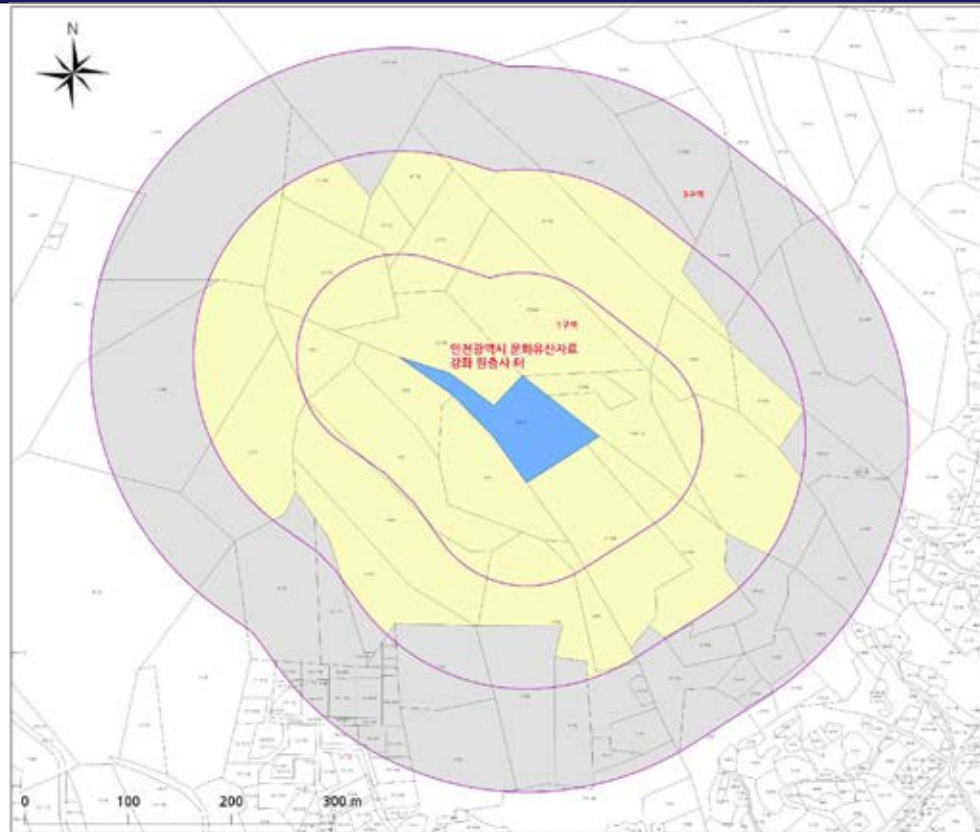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강화 원층사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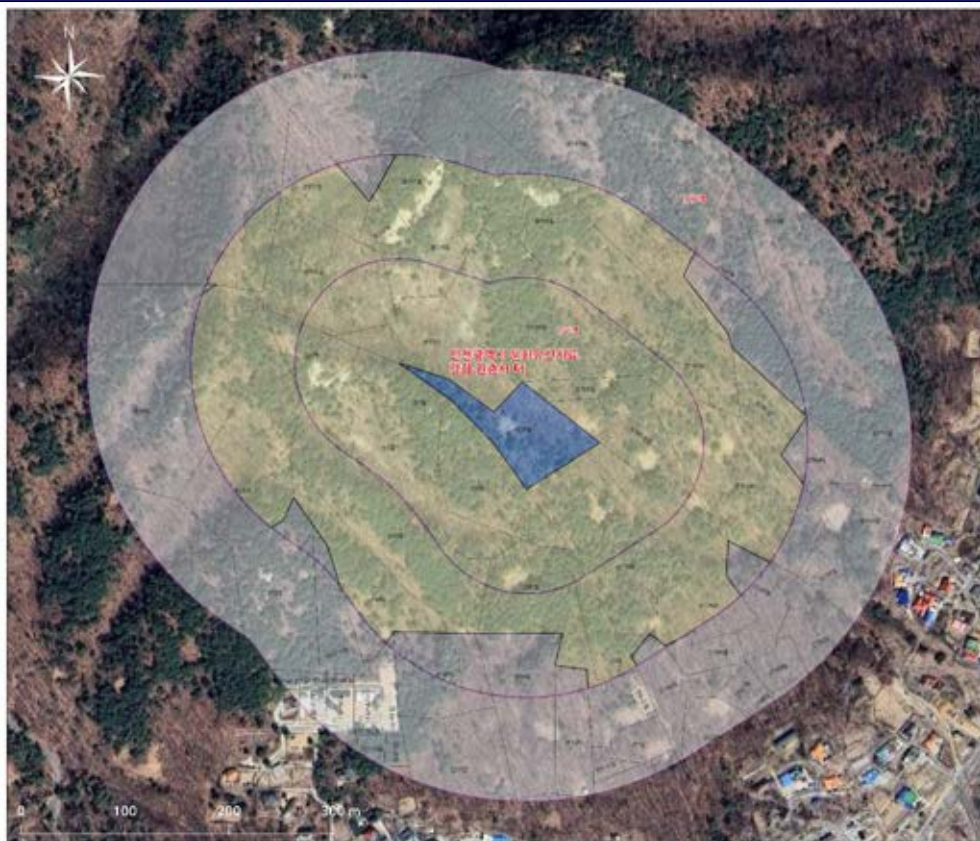
- 시지경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내용	주요사항
구분	제한구역	문화유산보호지역 내 건축행위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속격 (A3)	1:3,000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강화 원층사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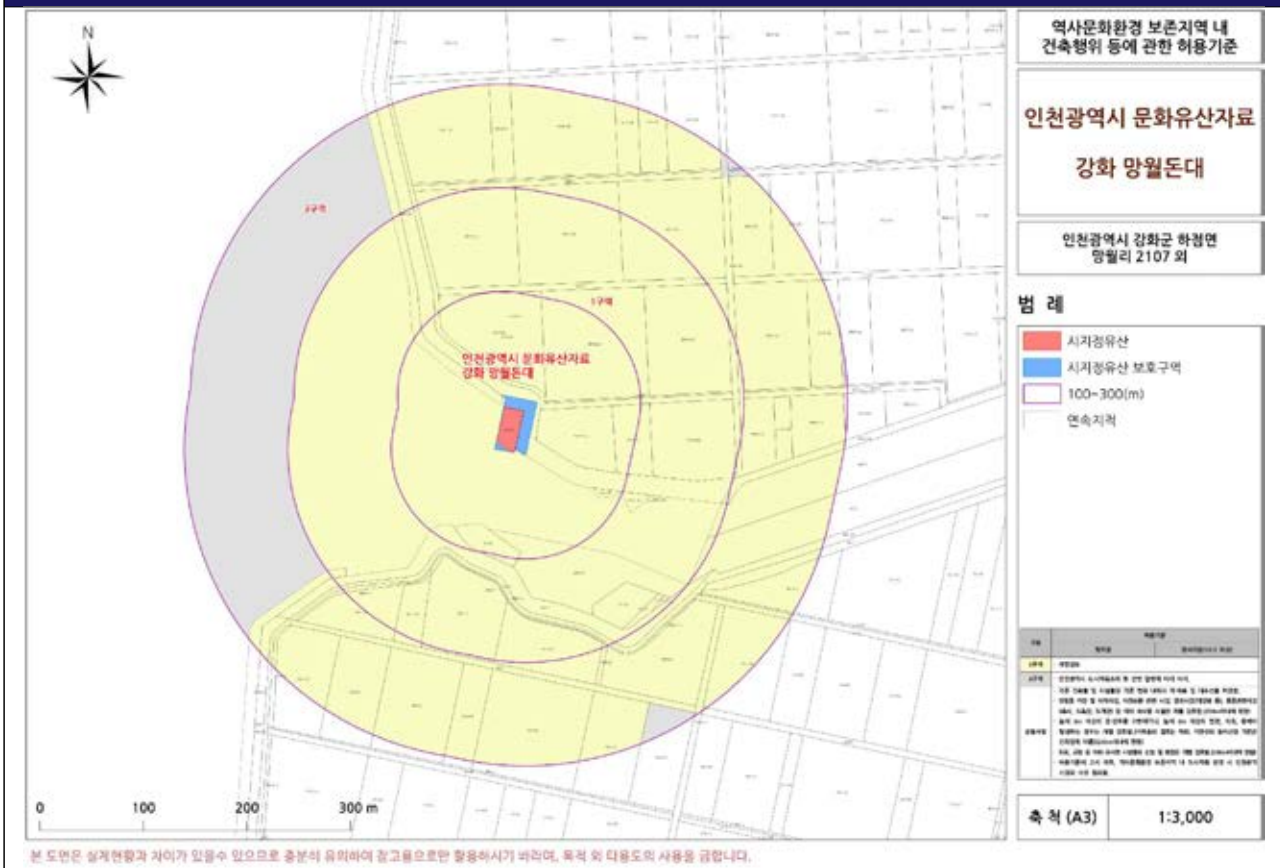
- 시지경유산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내용	주요사항
구분	제한구역	문화유산보호지역 내 건축행위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구분	제한구역	기밀 시설 등 시설물 건설 및 기타 시설물 건설 금지

속격 (A3)	1:3,000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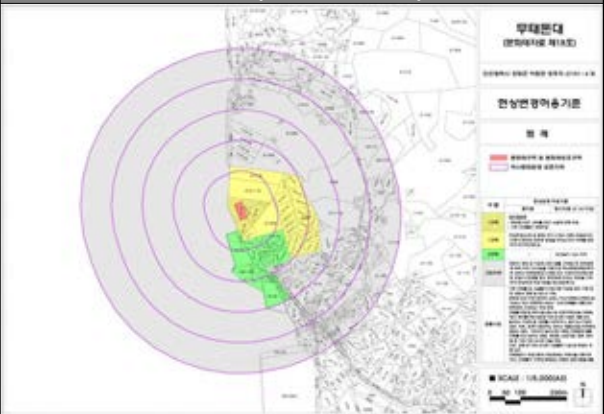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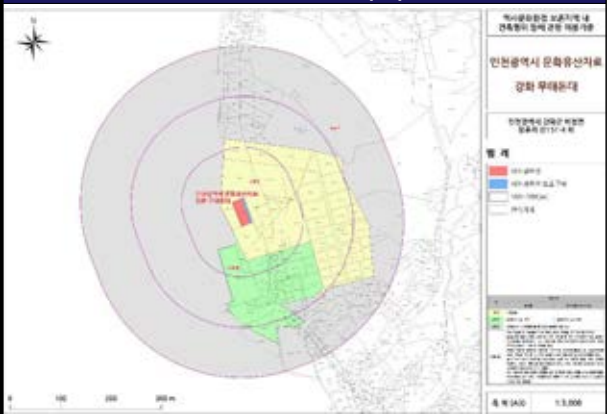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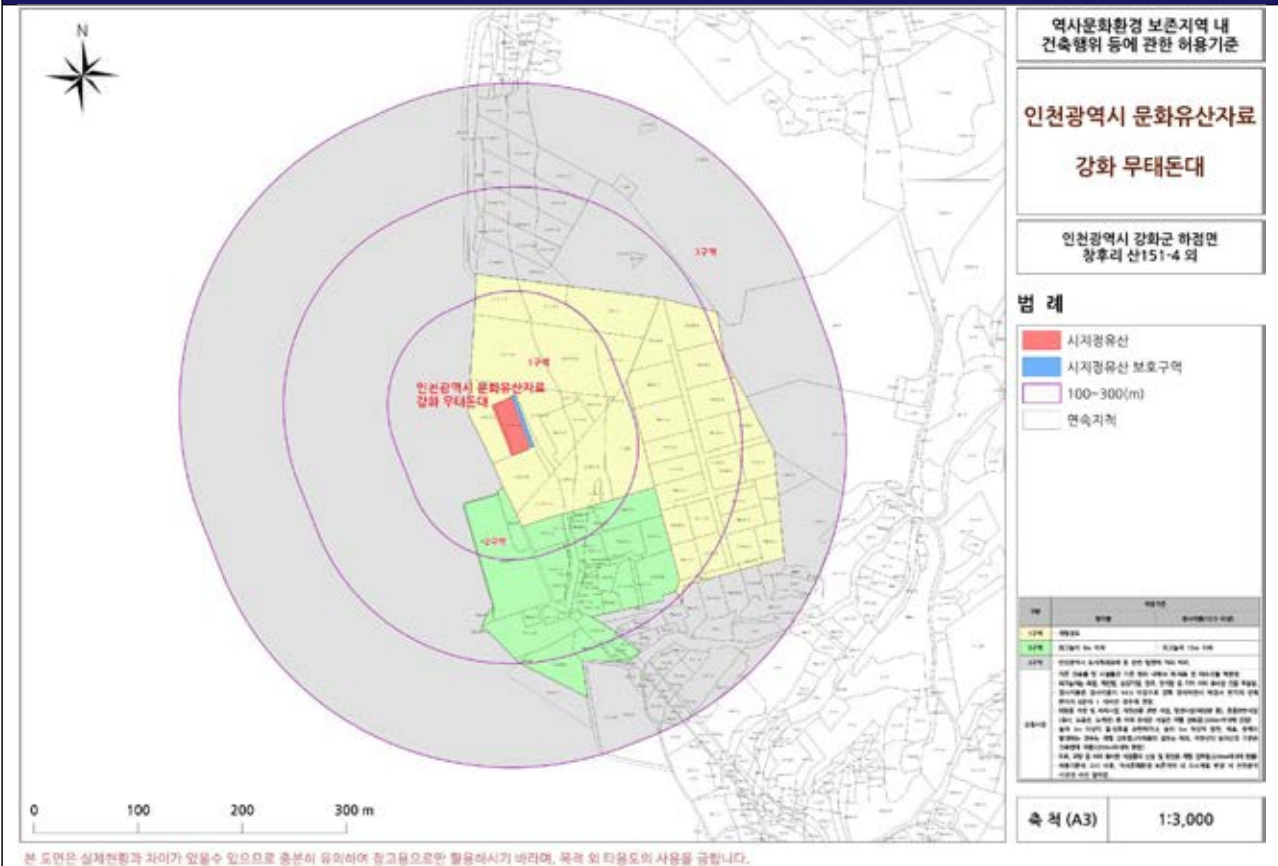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강화 무태돈대

구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도						
	기고시(2017.01.16.)		허용기준 조정(안)			
고시문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허용기준 조정(안) 위성영상도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주소 :
- 성명(법인, 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의견 내용

대상유산

-

의견사항

-

상기 본인은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의견제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